

금융정책 심포지엄

바람직한 금융점업화 추진방향

2005년 10월 19일

박경서*, 전선애**, 정지만***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kspark@korea.ac.kr)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sechun@chonnam.ac.kr)

***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jmjung@smu.ac.kr)

- 목 차 -

| | |
|----------------------------|----|
| I. 서론 | 3 |
| II.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 | 6 |
| 1. 금융겸업의 발전과정 | 6 |
| 2. 국내 금융겸업의 현황 | 10 |
| III. 외국의 겸업화 동향 | 22 |
| 1. 개요..... | 22 |
| 2.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23 |
| 3.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 27 |
| IV. 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 51 |
| 1. 금융업별 특성 | 52 |
| 2. 바람직한 겸업화의 방향 | 55 |
| V. 결론 | 69 |
| 참고문헌 | 70 |

I. 서론

최근 전세계 금융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금융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부응하는 금융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혁신과 첨단 금융기법이 등장하였으며, 금융의 글로벌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금융통합화(financial consolidation)에 힘입어 금융겸업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system)를 채택해온 독일 등 유럽의 국가는 물론이고, 1933년의 은행법(Glass-Steagall Act) 이후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system)를 고수하던 미국도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ss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GLBA)를 제정하여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의 분리장벽을 상당부분 제거하였다.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고객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금융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한 금융기관만이 생존을 담보 받는 금융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면 금융기관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전산비용, 정보비용 등의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금융겸업화는 금융기관의 업무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수요자에 대해서는 복합 금융서비스와 원-스톱 बैं킹(one-stop banking) 등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겸업화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문제를 초래하여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금융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취급업무의 확대에 의해 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소수의 대형 복합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지배의 가능성이 있고, 증권업무 등에서의 위험이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업무에 전이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불안정해지거나 중앙은행 및 예금보호장치 등 공적 안전망(government safety net)의 본래적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금융시장은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겸업화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정부의 까다로운 금융규제와 암묵적인 보호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주어진 업무영역에서 안주하며 어느 정도 생존을 보장 받고 있었다. 이때 금융겸업화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수익 기반의 문제로 인식되어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곤 했다. 이에 각 금융권은 정부에 대한 치열한 로비를 통해 자신의 업무영역에 타 금융권이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도 자신

은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타 금융권의 업무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충돌하였다. 또한 지난날 정부도 금융산업을 실물경제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해 왔으며, 금융겸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수요자의 편익을 증대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안전성 유지를 중시하였고 수익성이 악화된 금융권에 대해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는 방식으로 미봉적인 겸업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금융겸업화의 추진은 크게 확대되지 못한 채 대체로 전업주의제도의 기본 골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완화와 개방화가 크게 진전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상당수의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이제는 생존 금융기관들 간의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복합 금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신이 속한 금융권뿐만 아니라 타 금융권에 속한 금융기관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비금융기관인 일반 기업도 전자은행을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겸업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는 실정이다. 나아가 향후에는 국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금융의 글로벌화로 각국의 금융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대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타 금융업무에도 진출하려는 금융겸업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금융겸업화의 문제는 더 이상 금융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나 수익기반이 약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 수단이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과제로 인식할 때이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며 장기적 안목에서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겸업화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하부구조의 구축, 관계법규의 정비 및 감독방식의 개편 등을 준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도 장기적인 겸업화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에서의 금융겸업화 실태 및 현안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금융겸업화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먼저 해방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겸업화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겸업화 방식을 내부겸영 방식, 자회사 방식, 지주회사 방식, 업무 제휴 방식으로 나누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의 금융겸업화 현황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방카슈랑스와 비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겸업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IV장에서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특징을 간략히 개관한 후 최근 우리나라에서 금융겸업화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부겸영과 상호진출의 문제, 비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문제, 내로우뱅크

허용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V절은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이다.

II.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

1. 금융겸업의 발전과정

해방 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미국 및 일본의 금융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은행, 증권, 보험 산업이 서로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전문화하는 전업주의제도를 취하였다. 특히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동원 및 배분을 위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신규 진입, 자산의 운용은 물론 업무영역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주어진 업무영역 외의 타 금융업무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외부 규제의 제약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충분치 못하였고 선진 금융기법이 부족하였으며 복합적인 금융수요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은 자신의 고유한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할 여지도 적었다.

해방 이후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은 초기에 우리나라 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60년대 들어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은행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¹ 이를 위해 당시 산업자본이 소유하던 시중은행을 공기업화하여² 은행의 인사, 내부경영 및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한편, 기존의 은행만으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은행의 신설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에 1961년 중소기업은행, 1962년 국민은행을 설립하고 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하였으며, 1962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 1967년 한국외환은행, 1969년 한국주택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잇달아 설립하였다. 또한 1967-71년 기간 중에는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참여 하에 10개의 지방은행³을 신설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미국의 체이스맨하탄 은행을 시초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치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금융수요도 더욱 확대되면서 은행이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금융수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70년대에 들어 정부는 기존 은행의 겸업보다는 새로운 비은행 금융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다양해진 금융수요에 대응하였다. 특히 1972년의 8.3 조치를 계기로 다수의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관들

¹ 동시에 보험업법(1962) 및 증권거래법(1962)의 제정을 통해 금융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산업의 경우는 국민의 인식부족과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증권산업의 경우도 그 기반이 취약하여 증권과동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² 해방후 정부가 소유하던 시중은행을 1957년에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삼성, 상호, 대한제분 등의 기업 총수들이 대주주가 되었는데, 당시 이들 은행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³ 1959년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서울은행은 1962년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이 등장하였는데, 도시영세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신용조직을 정비하는 신용협동조합법(1972)을 제정하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상호금융을 설립케하였으며, 사채자금을 양성화하여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투자금융회사(1973), 서민이 이용하는 사채시장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1973), 주식 및 채권 등 증권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신탁회사(1974), 기업에 대해 장기간 시설을 대여하는 리스회사(1974), 그리고 외자도입 및 선진금융기법의 획득을 위한 종합금융회사(1976) 등의 신설을 유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합금융회사는 미국의 투자은행과 영국의 머천트뱅크를 모델로 삼아 도입되었는데, 비록 지점설치의 제한이 있었지만 은행 및 증권의 주요 업무를 본체 내에서 겸업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전업주의제도의 틀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출자를 유도하면서 부분적으로 자회사 형태의 겸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⁴ 이렇게 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설립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가 은행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원화되고 한편에서는 금융업의 겸업체제가 등장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는 범세계적인 금융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대내외로부터 강력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의 압력에 직면하였다. 특히 미국 등 자국 금융산업의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려는 국가들의 압력이 표면화되면서 과거의 명시적, 비명시적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에 대한 소유 측면에서의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며,⁵ 금융기관의 신규 진입이 허용되고 과거 억압적인 금융규제가 폐지되고 부분적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경쟁이 촉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는 그 진행과정이 매우 점진적이고 단편적이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화 조치가 후퇴되기도 하였다.⁶ 또한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금융권간 차별적 규제 문제도 심화되었다. 대표적으로 사례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던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비은행권에 비해 여·수신금리 규제 등을 강하게 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증대기능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⁷ 이에 정부는 은행권의 자금증대기능을 강화하고 수지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3년부터 시중은행에 대해 신탁업무의 취급을 다시 허용하였다.⁸

⁴ 그러나 이들 자회사는 대부분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들 은행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겸업의 효과를 얻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⁵ 이때 정부는 시중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식을 목적으로 동일인 소유한도 및 의결권 범위를 8%로 제한하였으며,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방식으로 은행경영에 대해 상당한 개입을 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는 영업지역이 국한되고 자산 규모도 작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용인하다가 1992년에 이르러 동일인 소유한도를 15%로 설정하였다. 한편 증권업과 보험업의 경우는 일찍부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소유 및 지배가 허용되어 현재까지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겸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⁶ 예를 들어 1988년에는 과감한 금리자유화를 시도하였으나, 금리상승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유화된 금리를 비명시적인 창구지도 형식으로 다시 규제하는 등 자유화 정책의 후퇴를 경험하였다.

⁷ 손상호·정지만(2001) 참조

⁸ 우리나라에서 은행의 신탁업 겸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인 일관성이 없이

은행신탁은 비록 은행의 고유계정과는 엄격히 구분하여 계리하였지만, 은행은 고유 업무에 대한 규제금리보다 높은 시장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외형을 크게 확대하였다. 은행신탁 외에도 은행의 수지보전을 위해 업무영역을 확대한 사례로 국공채 및 회사채 인수(1977),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도(1982), 환매조건부 회사채 매도(1990), 사모사채 인수(199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업무의 취급으로 인해 은행은 본체 내에서 증권관련 업무를 일부 겸업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볼 때, 각 금융권은 정부의 통제하에 고유의 주어진 업무영역에서의 제한적인 경쟁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겸업화의 체계적인 진전은 부진하였다.

90년대에는 정부가 금리자유화 4단계계획(1991), 제3단계 금융자유화 및 시장 개방계획(1993)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계획 하에서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들 규제완화 계획은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조치였으나 초기에 그 추진과정은 더딘 편이었다. 특히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완화에 있어서는 금융산업의 안전성 유지를 강조하여 소극적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의 금융제도 개편연구(1993), 정부의 신경계 장기구상 보고서(1996),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산업 개혁안(1997) 등에서는 각 금융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업무에 대해 겸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더욱이 업무영역 문제는 각 금융기관의 수익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금융간의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금융겸업화의 급격한 추진은 어려웠고, 결국 각 금융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주변업무를 중심으로 겸업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해서는 1994년에 개인을 상대로 신중 환매조건부 채권매도(거액RP)와 표지어음 판매, 1995년에 국공채 창구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1995년에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을 대상으로 한 외화 입출금 및 환전업무와 1996년 외화매입 및 보유, 외화차입 등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1996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함으로써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의 취급 등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93년에는 당시 은행감

단기적인 금융·경제상황 등에 따라 역전을 거듭하였다. 해방 당시 국내유일의 신탁회사로 한국(서울)신탁은행의 전신인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존립기반이 악화되자 정부는 1946년에 은행업의 겸업을 허용했으며, 1961년에는 시중은행, 1962년에는 부산은행에 대해 신탁업 겸업을 허용하였다. 그 후 은행의 신탁 외형이 확대되면서 자금의 전용 문제 등이 발생하자 1968년에 일반은행의 신탁상품에 대해 신규 수탁을 금지한 후, 1970년에는 은행의 신탁계정을 한국신탁은행으로 모두 이관함으로써 은행과 신탁의 분리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다시 1983년에는 시중은행, 1984년에 지방은행에 대해 신탁업의 겸업이 허용되었으며, 1985년에는 외환은행과 외은지점, 그리고 1989년에는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신탁업 겸업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은행의 신탁업이 신탁의 본질과는 다르게 기형적인 팽창을 거듭함에 따라 정부는 다시 1996년에 신탁만기의 장기화, 확정배당 신탁상품의 축소 등 은행의 금전신탁 취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이러한 방침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만기 6개월의 신중적립신탁을 다시 허용하기도 하였다. 2000년에 이르러서는 채권시가평가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신탁의 장부가 상품에 대해 신규 취급을 금지하였고, 2004년에는 간투법 시행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취급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은 금전신탁 가운데 특정금전신탁, 연금형 금전신탁, 퇴직일시금 신탁 등만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으며, 1997년말 171.5조원이던 금전신탁의 규모가 2004년말에는 47.9조원으로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한국은행(1999) 참조.

독원 규정인 금융기관 일반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명시적으로 은행의 자회사로서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자회사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은 크게 변모하여 금융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대외적인 압력과 함께 정부 주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규제완화 및 대외개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크게 진전하여 금융기관의 대형화도 크게 진전되었다. 그런데 겸업화와 관련해서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일시적 방책으로 금융권의 업무영역이 조정되기도 하였으나,⁹ 금융기관 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타 규제에 비해 업무영역규제의 완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다. 이에 2000년 1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위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여타 업무에 대해 타 금융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이나 지배구조상의 결합을 통한 금융겸업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하고 고유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중 금융기관간의 자발적인 업무제휴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 10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금융지주회사도 탄생하였다. 특히 2003년 8월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대리업 및 보험중개사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었다.¹⁰

이러한 변화와 아울러 전자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전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 등에 힘입어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구분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금융통합 현상이 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금융규제의 완화와 함께 40여 개의 금융관련법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금융통합법의 제정을 구상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복합금융수요의 등장, 이익극대화를 위한 국내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및 국제적인 금융통합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내에서의 금융겸업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⁹ 예를 들어, 종금사 퇴출에 따라 기업어음 할인업무를 은행신탁(1997.12), 여신전문금융회사(1998.1), 은행(1998.2), 투자신탁회사(1998.2), 보험회사(1998.6)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하이닉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겸업이 확대되었다.

¹⁰ 방카슈랑스는 은행과 보험간 금융겸업화 현상의 상징적인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8월에 보험회사를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이 시효를 상실함에 따라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입 단계에서부터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겸업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금융산업의 안전성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강조되었고 판매비중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나마 1단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 이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불공정 판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2005년 4월의 2단계 시행종목과 향후의 추진일정 등이 크게 후퇴하였다.

2. 국내 금융겸업의 현황

여기서는 금융산업에서 겸업의 형태를 크게 내부겸업 방식, 자회사 방식, 지주회사 방식, 그리고 업무제휴 방식으로 구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금융겸업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내부겸업 방식

금융겸업 중에서 내부겸업 방식(in-house 방식)은 하나의 금융기관이 본체내의 내부조직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금융업무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업무를 직접 겸업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및 대출과 같은 자신의 고유업무 외에 증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내부겸업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화는 단일 지배구조를 통해 복수의 금융업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의 경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수요자의 편의성 증대 등 금융겸업화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종 금융업무의 취급에 따른 이해상충과 이로 인한 금융수요자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각 금융권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업무의 구분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고유업무란 당해 금융권이 수행하는 본질적 핵심업무를 말하며, 부수업무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에 허용되는 업무이며, 겸영업무는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내부겸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업을 구분하는 전업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이에 각 금융권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 업무영역 규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전업주의 원칙에 의해 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거주의 방식으로 인해 더욱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타 금융권의 고유업무 및 상당수의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열거방식으로 허용한 일부 부수업무에 대해서만 내부겸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 등의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대출의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중개기관이다. 따라서 예금과 대출은 은행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으며, 은행법 시행령에서 <표 1>과 같이 은행의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재경부장관이 고유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가나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데,¹¹ 현재 재경부 고시에는 채무의 보증, 상호부금,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환매

¹¹ 은행법 제27조는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 제

조건부채권 매매, 팩토링, 보호예수 등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열거하고 있다.¹² 한편 은행의 겸영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 인가를 거쳐야 하는 업무로서 신탁업무, 카드업무, 자산운용업무가 이에 속한다. 그 결과 은행은 예대업무, 지급결제업무 등의 핵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증권관련 업무 가운데 주식 및 회사채 인수, 유가증권 위탁매매 등을 제외한 증권업무의 일부분과 보험업무 가운데 보험상품의 판매를 본체 내에서 직접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은행의 업무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타 금융권에 비해서는 다소 포괄적인 편이며, 은행은 월등한 네트워크와 고객층, 정보생산능력 등을 기반으로 겸업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¹³

<표 1> 우리나라 은행업의 업무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
| 고유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적금의 수입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외국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27 조 - 시행령 18 조의 2 |
| 부수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의 보증, 어음인수 - 상호부금 - 국공채의 인수·매출 -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 팩토링 - 보호예수 - 신용정보서비스 - 부동산 임대 - 파생금융상품 거래 - 기업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M&A 중개·주선·대리 -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업무의 수탁 - 수익증권, 보험상품의 판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27 조 - 시행령 18 조의 2 - 시행규칙(재경부 고시 2003-13) |
| 겸영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28 조 - 시행령 18 조의 3 |

18조의 2항에서는 은행업무의 범위를 제1호에서 3호까지 열거한 뒤, 제4호에서는 이들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도 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¹² 이때 유가증권의 인수·매출에 대해서는 그 하위 규정인 유가증권관련 감독규정에서 은행은 국공채 인수업무만을 허용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회사채나 주식을 인수할 수는 없다.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참조

¹³ 우리나라에서 특수은행으로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은행업과 동시에 보험의 일종인 공제업무를 내부 겸영하고 있는데, 김선호(1997)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겸업으로 인해 범위의 경제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는 증권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열거하고 있는데,¹⁴ 이에 의하면 증권업의 고유업무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위탁매매와 인수(underwriting) 등이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증권업의 부수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¹⁵ 이에 증권회사가 별도의 허가, 인가, 등록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 유가증권 관련 대리인 업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선물업,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중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신탁업 등의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별도 인가를 받은 후 본체 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증권회사의 겸영업무는 은행이나 보험 등의 타 금융권의 업무라기보다는 증권관련 업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권회사가 본체 내에서 은행, 보험 등의 타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된다.¹⁶

<표 2> 우리나라 증권업의 업무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
| 고유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2 조 8 항 |
| 부수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및 지분의 평가 - M&A 주선 또는 중개 - CD 매매와 중개 - 사채모집의 수탁 - 유가증권거래 관련 대리인 업무 - 기업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 유가증권의 보호예수 - 수익증권·보험상품 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51 조 1 항 - 시행령 36 조의 2 |
| 겸영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 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51 조 1 항 - 시행령 36 조의 2 |

¹⁴ 이때 증권업의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유가증권의 개념 정의가 필수적인데, 증권거래법 외에도 시행령에서 유가증권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열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증권업의 고유업무가 변동할 여지는 남아 있다.

¹⁵ 재정경제부령에 의해 추가 열거가 가능하다.

¹⁶ 또한 증권업 자체의 속성, 인력 및 네트워크의 문제, 정보의 문제 등으로 타 금융업을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보험업의 경우를 보면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고유업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그 고유업무라 볼 수 있다. 이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의 고유업무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분야로, 손해보험의 고유업무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공유하는 업무영역으로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분야를 제3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또한 보험업의 부수업무로는 보험수리,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의 조사 등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와 M&A 중개·주선·대리업무, 대여금고 제공 등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 및 자산 등을 활용하는 업무, 그리고 대출,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매매 등 부수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운용의 방법과 관련된 규정¹⁸에서 기술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

<표 3> 우리나라 보험업의 업무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근거 법령 |
|----------|---|---|
| 고유 업무 | -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 보험업법 2 조 |
| 부수 업무 | - 보험수리 - 보험사고 및 계약 조사 - M&A 중개·주선·대리 - 대여금고 - 수익증권 판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 대출 -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 파생금융상품 자기매매 | - 보험업법 11 조 - 보험업법 106 조 - 시행령 16 조 |
| 겸영 업무 | - 유동화자산의 관리 (당해 보험회사의 보유자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 - 보험업법 11 조 - 시행령 16 조 |

¹⁷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는 상법이나 외국의 사례 등을 보면 이들 제3영역은 생명보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보사와 손보사가 공히 겸영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다.

¹⁸ 보험업법 106조와 시행령 2조 및 49조.

2) 자회사 방식

자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이란 금융기관이 여타 금융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이를 통제함으로써 겸업의 효과를 얻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은행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는 경우이다.¹⁹ 이 경우 모회사는 내부겸업에 비해서는 겸업화의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자신의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겸업화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자회사 방식은 모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자회사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며, 특히 모회사의 리더쉽이 발휘될 경우 자회사간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시너지의 이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회사보다는 모회사 중심의 경영전략으로 인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하에서 금융기관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겸업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금융겸업화 이득을 누릴 수 있다.²⁰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 방식의 겸업 형태가 두드러진다. 은행권의 경우 은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회사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를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증권회사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산운용회사나 선물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형태의 겸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일부 생명 및 손해보험간에 자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 금융권에 비해 자회사 방식의 겸업이 미미한 상태이다. 특히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형태의 금융겸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들 금융기관의 자본력이 은행을 보유할 만큼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자본력이 충분한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자본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고 있는데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하에 이들 산업자본이 보유한 금융기관이 은행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¹⁹ 모회사가 자신이 단독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합작으로 공동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자회사를 통한 겸업방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 후자의 경우는 전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겸업의 효과가 감소된다.

²⁰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전업주의 원칙에 따른 해당 관련법률의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겸업의 효과를 십분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4>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자회사 보유 현황¹⁾ (2004년말)

| 모회사 자회사 | 은행 | | | 증권회사 | | 보험회사 | |
|----------------------|-----------------|-----------------|----|-----------------|----|------|----|
| | 시중 | 지방 | 특수 | 국내 | 합작 | 생명 | 손해 |
| 은행 | | | | | | | |
| 증권회사 | 1 | | 1 | 1 ³⁾ | | | |
| 생명보험회사 | 3 | | | | | | 2 |
| 손해보험회사 | | | | | | 2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1 |
| 자산운용회사 ⁴⁾ | 4 | | 3 | 12 | 2 | 1 | |
| 신용카드회사 | 1 | | | | | 1 | |
| 리스회사 | 1 ²⁾ | 1 ²⁾ | | | | | |
| 할부금융회사 | 2 | | 2 | | | | |
| 창업투자회사 | 2 | | | 1 | | | |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 | | 1 | | | |
| 선물회사 | 2 | 1 | 1 | 2 | 1 | 1 | |
| 신용정보회사 | 2 | 2 | 1 | | | | |
| 금융전산회사 | 5 | | 1 | | | | |
| 부동산신탁회사 | 1 | | | | | | |
| 자산관리회사 | 1 | | | | | | |
| 투자자문회사 | | | | | 1 | | 1 |
| 합계 | 25 | 4 | 9 | 17 | 4 | 5 | 4 |

주 : 1)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 외국계 금융기관, 해외 자회사, SPC 및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취득은 제외

2) 한국리스여신을 하나, 대구, 부산은행이 소유

3) 동양증권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지분 30% 이상 보유

4) 투신운용회사 포함

자료 : 각 금융기관의 사업보고서 등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직접금융이 확대되고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예대업무만으로는 수익성을 보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신의 우월한 정보생산능력과 네트워크 및 자본력을 기반으로 생존전략으로서 여타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선진국 은행의 경우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국내 은행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금융겸업화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자발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부 주도하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과거 투자신탁회사, 리스사의 경우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력이 있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케 하였으며, 일부 상호저축은행,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등은 정부 주도하에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이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되었을 뿐, 겸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장기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²¹ 이에 모회사인 은행이 주도적으로 자회사와 정보 공유, 복합금융상품의 개발 및 공동 판매, 고객기반 확충, 비용절감 등의 경영전략 하에 금융겸업화에 따른 범위의 경제 효과를 거두려는 노력이 부족했다.²² 더구나 자회사가 외형확대 및 모회사 임직원의 자리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회사의 전문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부작용도 경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가 기본적으로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있으며, 모·자회사 간의 업무제휴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회사 방식으로 금융겸업화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여의치 않은 실정이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전자통신기술이 발전하고 금융기관이 대형화 됨에 따라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금융회사를 인수하여 대형화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자회사를 통한 겸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3) 지주회사 방식

금융겸업 중에서 지주회사 방식은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복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선도하에 서로 다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혹은 협조 방식으로 시너지를 달성하려는 겸업화 방식이다. 이는 자회사 방식에 비해 지주회사 산하 금융기관간의 독립성이 높고 소속 금융기관간 위험부담의 차단도 가능하며, 유연한 합병 전략의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지주회사의 주도하에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자회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은 금융지주회사 내에 추가적인 인력이 요구되며, 중층적인 지배구조로 인한 경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형 금융지주회사의 형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및 경제력 집중,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²¹ 김동원(1995) 참조

²² 물론 모회사와 업무영역이 다른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 사업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어 2000년 10월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현재 3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이 이루어지고 있다.²³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 등의 자회사를 편입하여 2001년에 설립된 우리금융지주회사는 2005년 6월 현재 9개의 자회사와 12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고, 역시 2001년에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설립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현재 12개의 자회사와 12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에 증권중심의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한국투자(舊 동원)금융지주회사는 현재 3개의 자회사와 5개의 손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금융지주회사는 아직 설립된 역사가 일천하며 그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여 그 성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의 통합적 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자회사 방식의 겸업화에 비해 다소 양호한 수준의 겸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금융지주회사는 다수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주력 금융업에 대부분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겸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불충분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금융법 체계가 전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과 동시에 해당 금융관련법의 이중 규제를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배구조의 중복이 발생하고, 시설의 공동이용, 복합상품개발 및 판매, 업무위탁 및 자회사간 거래 등에 있어 지주회사를 통한 겸업의 시너지 창출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⁴

<표 5>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영업구조 및 비중¹⁾

| | 우리금융지주 | | 신한금융지주 | | 한국투자금융지주 | |
|----|----------------------|-------|-------------|-------|------------|-------|
| | 자회사 | 비중(%) | 자회사 | 비중(%) | 자회사 | 비중(%) |
| 은행 | 우리, 광주, 경남 | 95.60 | 신한, 조흥, 제주 | 97.75 | - | |
| 증권 | 우리투자증권 ²⁾ | 3.97 | 굿모닝 신한증권 | 1.91 | 한국투자 증권 | 80.26 |
| 보험 | - | - | SH&C 생명보험 | 0.20 | - | |
| 카드 | - | - | 신한카드 | 1.05 | - | |

²³ 금년 7월에는 (가칭)하나금융지주회사의 설립(예비)인가신청이 접수되어 그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²⁴ 예를 들어, 여러 자회사의 콜센터 기능을 통합한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 설립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견범(2005) 참조.

| | | | | | | |
|----------|--------------------------------------|------|--|------|------------------------------|-------|
| 자산 운용 | 우리자산운용 | 0.02 | 신한 BNP 파리바 투신운용, 신한 맥쿼리금융자문 | 0.04 | - | |
| 기타 | 우리금융정보 시스템, 우리에프엔아이유 동화전문회사 | 0.41 | 신한캐피탈 신한프라이빗에 쿼티, 신한신용 정보, e-신한 | 0.96 | 동원창업 투자, 동원 상호 저축은행 | 19.74 |
| 계 | | 100 | | | | 100 |

주 : 1) 2004 년말 총자산 기준

2) LG 투자증권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4) 업무제휴

업무제휴 방식에 의한 금융겸업은 소유구조와는 관계 없이 이중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계좌개설 등을 공동으로 혹은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겸업의 이득을 취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업무제휴 방식은 금융겸업의 방식 가운데 가장 느슨한 형태로서, 겸업이라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금융기관들간에 상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위탁 및 수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제휴는 금융기관들 상호간에도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통신회사나 물류회사 등의 비금융회사와 위탁관계를 맺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금융기관의 업무제휴는 업무의 아웃소싱 형태 등으로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업무위탁이 체계화된 것은 2000년 1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대출신청 접수, 통장 입출금 등의 수신업무, 증권거래 계좌개설, 공모주식 청약접수, 보험증권 발급대행,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인터넷 금융서비스, 현금서비스 자동화기기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제휴가 새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업무제휴는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고객을 확보하고 일종의 겸업효과를 통한 금융중개비용 절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업종 간에 업무제휴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아래 <표 6>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은행을 중심으로 업무위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²⁵

²⁵ 금융기관은 새로운 내용의 업무위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되었고 추후 타 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업무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보고 건수로 집계되지 않았다. 또한 보고 건수만으로는 실제 업무위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업무제휴에 있어 은행의 비중이 지배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6> 금융업종별 주요 업무위탁 내역

| | 주요 업무위탁 내용 |
|------|---|
| 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취득 예정주택에 대한 임대차 조사업무 - 대출신청서류 접수업무 - 통장입출금, 무통장입금거래, 자기앞수표 지급 등 수신업무 -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대출서류 교부 및 접수업무 - 특정금전신탁재산운용업무 중 주식운용 및 주가지수 선물운용 업무 - 가상계좌관리업무 중 사용업체 모집 및 거래내역 통지업무 - 고객정보관련 전산입력 업무 및 서류 발송·접수업무 - 스왑·채권거래계약 관련 법률 검토 및 리스크 측정업무 - 외화표시 담보물 평가, 담보물 수취 및 인도업무 - 신용카드 접수 및 현금 서비스 업무 |
| 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계좌 개설, 자금 입출금 업무 - 인터넷 홈페이지 상호 광고, 영업망 공동 이용 -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개설 신청서 접수 - 거래내역 발송업무 - 공모주식 청약 접수업무 |
| 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증권 발급 대행업무 - 대출상담 및 대출중개업무 - 보험계약 관련 전화상담업무 - 연체채권 관리 및 추심업무 -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보험료 수납업무 |
| 저축은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상품 소개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 |
| 종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금융서비스업무 위탁 -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업무 |
| 캐피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모집 업무 |
| 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서비스 관련 자동화 기기 이용 - 회원의 입회신청서 전산입력 |

자료 :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표 7> 금융업종별 업무위탁 등 보고 건수

| 구 분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상) | 총 계 |
|------------|----|------|------|------|------|------|-------------|-----|
| 은행 | 위탁 | 9 | 3 | 12 | 14 | 21 | 4 | 63 |
| | 수탁 | - | - | - | 1 | 1 | - | 2 |
| 증권 | 위탁 | 2 | - | - | - | 4 | 2 | 8 |
| | 수탁 | - | - | - | - | - | - | - |
| 보험 | 위탁 | 2 | 2 | 1 | 1 | 8 | - | 14 |
| | 수탁 | - | - | - | - | - | - | - |
| 종금 | 위탁 | 2 | 1 | - | - | - | - | 3 |
| | 수탁 | - | - | - | - | - | - | - |
| 상호 저축은행 | 위탁 | - | 1 | - | - | - | - | 1 |
| | 수탁 | - | - | - | - | - | - | - |
| 여신전 문회사 | 위탁 | - | - | - | 1 | 6 | 4 | 11 |
| | 수탁 | - | - | - | - | - | - | - |
| 총 계 | 위탁 | 15 | 7 | 13 | 16 | 39 | 10 | 100 |
| | 수탁 | - | - | - | 1 | 1 | - | 2 |

자료 : 금융감독원, <http://dtm.fss.or.kr/kor/dtm/gen/trust.jsp?menu=dtm010600>

그런데 지난 2000년의 규정이 열거주의에 따른 포지티브 규제방식이어서 금융기관의 창의적인 업무제휴를 제약하였기에, 2005년 7월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원칙 허용 예외금지의 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각 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된 경우, 그리고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무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사후보고제를 사전보고제로 전환하고, 업무제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업무제휴의 허용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투명해졌으며, 금융겸업의 효과를 거두는 데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는,²⁶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서 예금계약 체결, 채무부담의 증명(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등), 대출심사 및 승인, 유가증권 위탁매매의 계약체결과 고객정보 확인, 유가증권 인수 및 모집 매출의 주선,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보험상품 판매), 보험회사의 경영 및 상품 공시 등 금융

²⁶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참조.

기관의 핵심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부수업무를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때 본질적 요소로 지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본질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업무제휴의 가능성을 제약한 것은 전업주의의 전통을 따르는 한편 금융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간 업무제휴의 대상 범위에 대해 과도하게 제약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본체 내에서 수행할 경우 고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자신은 특정 업무에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또한 내부겸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주회사 방식 혹은 자회사 방식을 통해 겸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제약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III. 외국의 겸업화 동향

1. 개요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은행이 예대업무 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무 등의 비은행 금융업무를 은행의 본체내, 자회사, 은행이 소속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겸업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오래 전부터 동일 법인체에서 상업 및 투자은행의 겸업을 허용해 온 독일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도 1980년대 후반 부터 지주회사, 자회사 방식을 통해 방카슈랑스를 도입하는 등 겸업화가 이미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폭 넓게 진행되어 왔다.

한편,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아래 은행의 증권업무 수행을 엄격히 규제해 왔던 미국에서도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은행들이 증권이나 보험업에 이미 진출해 있었으며, 지난 1999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업간의 진입장벽 철폐를 골자로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겸업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전업주의 국가인 일본도 1995년 일본판 금융빅뱅을 계기로 금융의 겸업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로 겸업의 형태를 보면 독일의 경우 단일 금융기관이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²⁷를 겸영하는 반면 타 금융업의 경우 별도의 자본력을 갖춘 자회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형태를 주로 취하며²⁸, 영국의 경우에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자본력을 갖춘 자회사를 자회사방식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금융통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²⁹ 미국의 경우에는 독립된 지주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소유하여 겸업화를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겸업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계의 겸업화 동향을 은행의 업무 다각화 허용 정도 및 비은행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관련 규제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이행한 미국과 일본, 전통적으로 겸업주의를 도입했던 유럽의 독일, 프랑스 및 80년대 금융대변혁을 경험하였던 영국의 겸업화 과정을 정리한다. 은행의 보험 및 증권업 진출과 함께 증권업과 보험업의 은행업 진출 사례 및 방카슈랑스 사례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 사례를 정리한다.

²⁷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주로 예금 및 대출과 같은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우리나라의 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주식, 채권의 판매와 같은 장기 산업자금의 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의 개념과 유사하다.

²⁸ 독일의 Deutsche은행, Dresdner은행, Commerz은행 등 독일 Grossbanken (“대형은행”) 및 지역은행, 대형 스위스 은행이나 유럽의 다른 금융기관들의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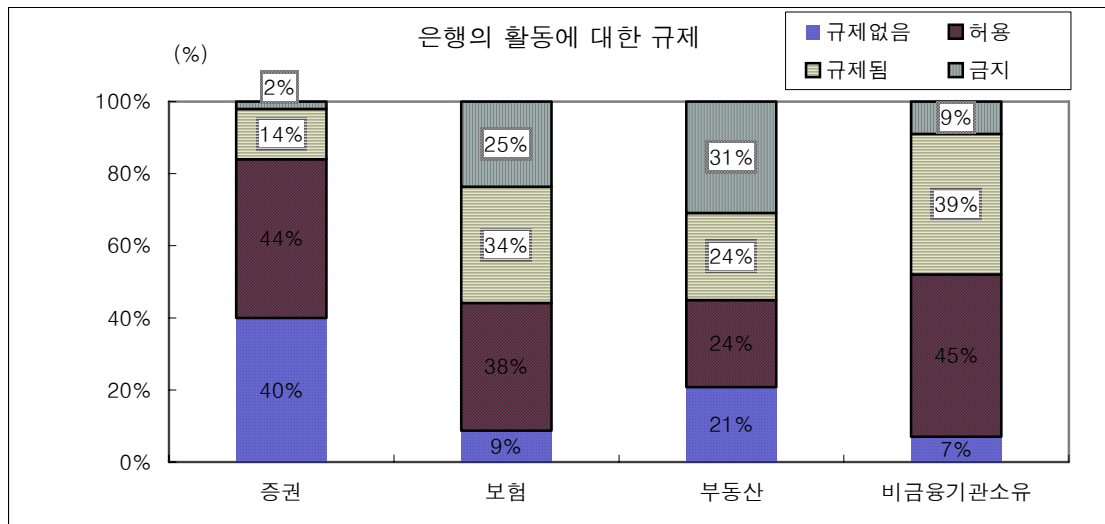
²⁹ 영국의 Barclays은행, Loyds TSB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규제완화 및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전세계 국가들의 금융서비스 산업은 효율성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한 금융산업의 겸업화 및 통합이라는 보편적인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겸업화 수준은 시장상황, 금융환경, 금융구조, 규제 및 감독제도, 문화·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Barth, Caprio and Levine, 2001).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영역은 국가간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가별로 “은행”이 의미하는 바가 상이함을 보인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 영역 중 가장 규제가 많은 곳은 부동산이고 가장 규제가 적은 분야는 증권업이다. 150여 개 조사대상 국가 중 31%의 국가에서 은행의 부동산업무가 금지되고 있는 반면, 2%에 해당되는 국가만이 증권업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는 조사대상 중 7%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규제가 없는 반면, 9%의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표 8>은 150여개 국 중 OECD를 포함한 주요국에서의 은행의 증권 및 보험업에서의 업무규제 현황을, <표 9>는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규제 현황을 보여준다.

<그림 1> 은행의 활동에 대한 규제



자료: Barth, Caprio and Levine (2001)

주: 1) 여기서 증권업은 은행의 증권 인수, 중개, 딜링 그리고 뮤추얼펀드산업 활동에의 참여 가능 여부를, 보험업은 은행의 보험의 인수 및 판매 가능 여부를, 부동산은 은행의 부동산투자, 개발, 관리 등의 활동 가능 여부를,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는 은행의 비금융 기관의 소유 및 지배가능 여부를 나타냄

2) 증권, 보험, 부동산의 경우 규제없음(unrestricted)은 은행이 직접 모든 영업활동 가능, 허용(permitted)은 은행은 모든 활동이 가능하나 전부 혹은 일부는 자회사를

- 통해 가능, 규제됨(restricted)은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일부 영업활동 가능, 금지(prohibited)는 은행이나 자회사를 통해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
- 3)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의 경우 규제없음은 은행이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가능, 허용은 은행이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가능하나 소유한도는 은행의 자기자본에 기초하여 제한, 규제는 은행이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불가능, 금지는 은행이 비금융기관의 주식에 전혀 투자할 수 없음을 의미

<표 8> 주요국 은행의 증권 및 보험업 규제

| | 규제내용 | 국 가 |
|-----|------|---|
| 증권업 | 규제없음 |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나마,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우루구와이 |
| | 허용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와질랜드, 스웨덴, 미국, 베네주엘라 |
| | 규제 | 브라질,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
| | 금지 | - |
| 보험업 | 규제없음 |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페루, 남아프리카, 우루구와이 |
| | 허용 | 아르헨티나,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홍콩, 일본, 라트비아, 노르웨이,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베네주엘라 |
| | 규제 |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체코, 독일,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포르투갈, 루마니아, 한국, 스페인 |
| | 금지 | 이스라엘, 파나마, 스와질랜드 |

<표 9> 주요국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 규제

| 규제내용 | 국가 |
|------|---|
| 규제없음 | 브라질,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
| 허용 |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필리핀, 러시아, 남미, 터키 |
| 규제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포르투갈, 루마니아, 한국, 미국, 베네주엘라 |
| 금지 | 볼리비아, 칠레,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우루구와이 |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 허용과 증권, 보험, 및 부동산투자 등 업무다각화의 허용 정도 등의 변수가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arth, Caprio and Levine(2001)은 이들 4개의 변수를 결합하여 <표 10>에서와 같이 지수화 하였다.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와 증권, 보험 및 부동산 투자 등 3가지 업무다각화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를 1, 있는 경우를 4로 수치를 부여한 결과, 독일(1.3), 뉴질랜드(1.0)는 은행의 업무다각화에 규제가 없는 국가로, 반면 중국(3.5)과 인도네시아(3.5) 등은 규제가 상당히 존재하는 국가로 분류되었다. 일본, 미국의 경우도 최근 은행법과 은행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규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힘만이 아니라 금융규제환경이 은행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표 10> 은행의 업무 다각화 및 비금융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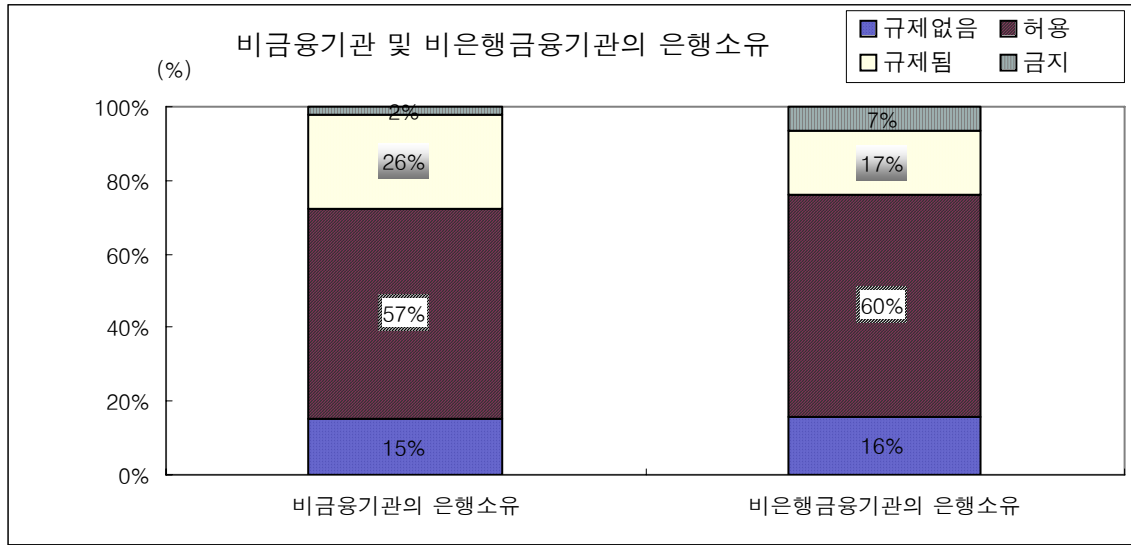
| 규제정도 | 국 가 |
|---------|---|
| 1~1.5 |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프랑스,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
| 1.6~2.0 |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핀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터키, |
| 2.1~2.5 | 벨기에, 베네수엘라, 바레인, 브라질, 덴마크,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우르구와이, |
| 2.6~3.0 |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파나마, 미국, 체코,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한국 |
| 3.1~3.5 |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스와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

자료: Barth, Caprio and Levine(2001)

주: 수치는 1에서 4까지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가 많음을 나타냄

<그림 2>는 비금융기관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소유 가능 여부를 보여준다. 150여개 국가 중 전반적으로 적은 수의 국가에서 은행과 산업의 결합이 금지됨을 알 수 있다. 비금융기관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에 있어 조사대상국 중 15%의 국가에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비금융기관 소유에 대해 규제가 없는 국가의 비중(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은 150여개국 중 OECD를 포함한 주요국의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은행소유 규제를 보여준다.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스, 라트비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필리핀, 스와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주식소유의 최대 가능 한도와 같은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비금융기관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소유



자료: Barth, Caprio and Levine (2001)

주: 비금융기관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은행소유의 경우, 규제없음은 비금융기관의 은행주식 100% 소유가능, 허용은 사전승인이 필요, 규제는 주식소유의 최대가능 비율과 같은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음, 금지는 은행에 대한 주식투자가 금지됨을 의미

<표 11> 주요국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은행 소유 규제

| | 규제내용 | 국 가 |
|-----------------|------|---|
| 비은행 금융 기관 | 규제없음 | 볼리비아, 브라질, 그리스, 라트비아, 뉴질랜드, 폴란드, 남아프리카, 영국 |
| | 허용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터키, 미국, 우루구와이 |
| | 규제 |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필리핀, 스와질랜드 |
| 비금융 기관 | 규제없음 | 볼리비아, 브라질, 프랑스, 그리스, 라트비아, 영국 |
| | 허용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우루구와이, 베네수엘라 |
| | 규제 | 캐나다, 홍콩,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스와질랜드, 미국 |

3.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1) 미국

미국은 대공황 이전까지는 은행이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겸업하여 왔다. 그러나,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하여 1만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하는 등 미국의 금융제도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자, 증권업 겸영에 따른 위험 증대가 은행도산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에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33년 상·하 양원은 Glass의원이 제안한 은행의 겸업금지법안과 Steagall의원의 예금보험법안을 통합한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일명 Glass-Steagall Act)을 제정하였다.

<표 12> 1933년 은행법의 겸업금지 내용

- 은행의 증권 인수 및 거래 금지. 대리인 자격으로 증권매매는 가능, 단, 국채 관련 업무는 제외(제16조)
- 은행이 증권 인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와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제20조)
- 증권회사의 예금수치 금지(제21조)
- 은행과 증권 인수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간에 이사 등을 겸임하는 것 금지(제32조)

195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회사채발행이 급증하게 되자 대형 은행들은 글래스-스티걸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은행지주회사를 통해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와 수평적 계열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증권업 및 보험업으로의 업무확장을 시도하였다. 이에 미국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을 제정하여 다른 주에 소재하는 은행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복수은행지주회사(multi-bank holding company)는 반드시 FRB에 등록하고 이로부터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수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를 금지시켜 은행업과 직접 관련되는 이외의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0년에는 은행지주회사법을 수정하여 단일은행지주회사(one-bank holding company)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지주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은행업무 또는 은행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한정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은행과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은 법률적으로 업무영역이 모호한 부분에 침투함으로써 증권업무로의 진출을 지속하였다. 이에 은행이 전문중개(full broker)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사모(private placement) 형식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방준비이사회(FRB)는 1987년 상업은행이 증권 인수(underwriting)의 투자은행업³⁰과 관련한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글래스-스티걸법 제20조를 재해석하여 투자은행업과 관련한 상업은행 자회사의 수익이 해당 회사 전체 수익의 5%를 넘지 않을 경우 동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 영위를 허가하였다. 이러한 은행들의 규제탈피 노력에 따라 사실상 증권업과 은행업을 겸영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89년 JP Morgan, Citicorp, Bankers Trust, Chase Manhattan 등은 계열사를 통한 회사채 인수업무를 허용 받았다. 특히 이들 중 JP Morgan은 90년 증권자회사를 통해 주식의 인수, 딜링업무를 허용 받기도 하였다.³¹

증권업무에 관한 법적 제한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은행의 관심은 보험업무에도 미쳐, 일부 주이기는 하지만 은행이 은행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방식으로 보험업에 진출하였다. 1995년 1월 연방대법원이 국법은행도 연금상품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1996년 3월에는 국법은행은 인구 5,000명 이하의 소도시에 소재한 경우 보험판매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은행의 보험업 진출은 본격화 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간 동질화 경향에 따라 글래스-스티걸법에 근거를 둔 은행에 대한 업무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유럽의 은행들은 산하에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두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글로벌화된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타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금융 겸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은 실제적으로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타 금융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1998년 9월 23일 FRB는 Citicorp의 Travelers Group 인수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은행지주회사법 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지주회사가 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허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³⁰ 미국 증권산업 내부에서는 유가증권 인수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업무를 전통적으로 투자은행업이라고 불려왔다. 오늘날의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은행업인 유가증권 인수업무 이외에 유가증권 위탁매매, 고유계정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 뮤추얼펀드 판매 및 관리 등을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산관리, 모험자본, 기업인수·합병(M&A) 중개 등의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³¹ 1990년대 이후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을 적극 취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업은행을 모태로 한 Citigroup과 JP Morgan Chase 등이 유가증권 인수업무에서 전통적인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Lehman Brothers, Goldman Sachs 등과 대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으로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인정하여, 금융지주회사 하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자회사가 형제회사로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은 시장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후속적인 법 개정으로, 미국의 겸업화는 각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 확대로 은행과 보험 및 증권사 업무영역의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진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미국의 금융겸업화 관련 규제 내용

| 년도 | 규제 내용 |
|------|--|
| 1933 | - 글래스-스티걸 법 제정: 은행과 증권의 겸업 금지 |
| 1956 | - 은행지주회사법 제정: 복수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 금지 |
| 1970 | - 은행채주회사법 수정: 단일은행지주회사도 FRB의 규제를 받음 |
| 1987 | -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 허가(투자은행업 관련 자회사 수익이 전체 5%이내) |
| 1996 | - 은행의 보험업 진출 본격화 |
| 1999 | -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 금융지주회사하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자회사 허용 |

금융서비스현대화법하에서 폐지된 것은 1933년 법의 제20조와 제32조로 은행지주회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한 증권관련 업무 제한이고, 제16조 및 21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은행의 증권업무 사내 겸영 및 증권회사의 예금수취는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즉, 금융서비스현대화법하에서 금융의 겸업화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자회사별 업무영역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여, 개별 금융업종 자체로 보면 전업주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표 14>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이후 미국 은행의 허용 업무

| | 은행 본체 | 은행지주회사 또는 국법은행의 자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
|---------|---|---------------------|-------------|
| 일반 은행업무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CD 발행 및 매매, 대출, 금융자문, 신용카드 업무, 보관/관리/리스 등 | 좌동 | 좌동 |
| 신탁업무 | 일반신탁 | 좌동 | 좌동 |
| 증권업무 | 뮤추얼펀드 인수/판매, 투자자문, 일부증권 인수, 딜링업무(연방 및 지방정부채, MBS, 사모CP) | 모든 증권업무* | 모든 증권업무 |

| | | | |
|-------------|--------------------------------|---|----------------------|
| 보험, 연금 업무 | 인구 5천 이하 지역 보험대리점, 신용보험 인수, 판매 | 조건충족* 국법은행 자회사: 보험 및 연금 브로커 및 판매. 신용보험** 인수, 판매 | 모든 보험업무 (보험 인수 및 판매) |
| 머천트 뱅킹업무 | 금지 | 허용 | 허용 |

자료) 김형원 · 김승년(2004)

주석) * 자본금, 경영실태, CRA rating 등에서 우수한 은행

** 모기지, 사망, 질병, 장애 시 잔여부채에 대한 보험 등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통과는 지난 20여년간 진행되어 온 비은행, 특히 증권부문의 급성장으로, 자산 및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은행 산업에 은행의 업무영역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 법의 통과를 계기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윈스톱 서비스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여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1996년말 미국 FRB가 은행의 증권자회사 영업수익 상한을 지주회사 전체 영업수익의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형화를 통한 투자은행간 경쟁이 심화된 점³² 등도 금융산업 통합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기관 간 흡수·합병 현상이 지속된 결과 1980년대 중반 14,500여개 었던 미국 내 은행수는 현재 9,000여 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1) 증권사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

증권업의 은행업 진출은 70년대 후반 고금리시대에 머니마켓뮤추얼펀드(MMF: Money Market Mutual Fund)를 통해 은행의 저축자금이 증권업계로 대거 유입되면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 Merill Lynch는 캐쉬매니지먼트구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를 통해 수표발행을 시도하였는데, CMA는 유가증권 구좌이므로 이를 통해 유가증권을 사고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표발행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금카드로의 인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과 직접 경쟁이 촉발되었다.³³

³² 대형 투자은행인 Merill Lynch와 경쟁하기 위해 1997년 2월, 도매(wholesale) 업무 중심의 Morgan Stanley와 소매(retail) 업무 중심의 Dean Witter가 합병하였다.

³³ 1973년 미국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Merill Lynch사는 자산관리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76년 Merill Lynch Asset Management사를 설립하고 이후 CMA를 개발하였으나, 지주회사 산하에 고객예금의 수신이나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계열회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Merill Lynch CMA에서 결제 및 카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Bank One of Cincinnati와 합작투자를 하였으며, Merill Lynch CMA에서 결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승인한 주법 은행인 MLBUSA(Merill Lynch Bank U.S.A.)와 MLB&T(Merill Lynch Bank and Trust)를 100% 완전 자회사

미국의 증권 및 보험사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이전까지 글래스-스티걸법에 의해 은행업무가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들은 은행업무를 수행하지만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는 저축기관 등 non-bank bank를 보유함으로써 은행업에 진출해 왔다.³⁴ 나아가 상업은행을 인수하여 상업대출부문을 전부 매각하는 방법으로 non-bank bank로 전환시키기도 하였다.³⁵

보험사의 증권업 진출 혹은 증권업의 보험업 진출은 비교적 제한이 없어 Prudential과 Equitable 등이 증권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산운용부문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 투신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에 대한 면허 및 규제는 주정부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통해 보험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은행과 보험사간 인수합병의 예로 Citicorp는 Citibank와 Travelers 양사의 상품을 교차판매 할 목적으로 금융 및 보험서비스 복합그룹인 Travelers Group과 합병하여 1998년에 Citigroup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외의 대형 상업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인수합병의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미국 보험사의 ROE가 상업은행의 ROE에 비해 낮아 투자유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는 은행업의 경우 자금결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의 설비확충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보험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간주하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가 심하여 사실상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미 은행시장이 포화상태여서 진출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non-bank bank의 형태인 저축대부조합에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는데, 푸르덴셜 생명은 1983년에 증권자회사를 통하여 아틀란타주와 조지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non-bank bank인 Capital City Bank of Hapeville을 인수하고, 또한 1989년에는 파산한 저축금융기관을 인수하여 Prudential Bank and Trust로 통합하여 부분적이긴 하지만 은행업무에 참가하였다. 동 은행은 신용카드의 발행을 주요업무로서 영위하고 또한 주택담보대출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Prudential Bank and Trust와 Prudential Savings Bank를 인터넷상에서 하나로 통합한 Prudential Bank³⁶에서 고객에게 사이버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³⁴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당좌예금업무와 상업대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만을 은행으로 정의하여 예금, 대출업무 가운데 하나만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은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³⁵ 1987년 금융기관 경쟁력 균형법(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이 제정되어 증권회사들의 non-bank bank 설립이 금지되었다. 단, 이전에 설립된 약 160개의 non-bank bank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³⁶ Prudential Bank는 계약자에게 신용카드 제공 및 DM을 통한 고객 확보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텔리뱅킹을 통한 home equity loan, 신탁, 예금계좌 개설 등의 저축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은행상품 판매에 보험모집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표 15> 미국의 증권사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

| 업종 | 사 례 | 비고 |
|-------|---|--------------------------|
| 은행→보험 | - Citicorp는 Travelers Group과 합병 | 1998 |
| 증권↔보험 | - Prudential, Equitable은 증권 자회사 보유 - 보험사들은 투신사를 자회사로 보유 | |
| 보험→은행 | - 프루덴셜은 저축금융기관을 인수, Prudential Bank and Trust로 통합, Prudential Bank에서 사이버은행서비스 제공 - State Farm은 State Farm Bank라는 자회사 설립 - MetLife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Grand Bank(MetLife Bank) 인수 | 1989 1999.5 2001.2 |

자료: 정세창·권순일(2001), 정세창·박홍민·이정환(2002)

State Farm은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손해보험사로서, 1998년 11월에 저축기관감독국(OTS)과 연방예금보험기구(FDIC)로부터 저축금융기관인 연방저축은행의 설립에 대한 인가를 취득하고, 1999년 5월에 State Farm Financial Service(State Farm Bank 라고도 함)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업에 진출하였다. State Farm Bank는 점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모회사인 State Farm의 16,000명에 달하는 에이전트를 통하여 인터넷과 우편, 전화 등으로 고객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제정 이후 보험사들은 은행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은행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MetLife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 2000년 중반에 뉴저지에 소재하고 있는 Grand Bank를 인수하여 2001년 2월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 방카슈랑스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금융시장 비중 감소와 수익성 저하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방카슈랑스 성공은 은행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유럽에 비하여 방카슈랑스 도입이 늦은 관계로 생명보험상품의 은행을 통한 판매비중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도입으로 방카슈랑스가 허용되었으나, 보험업법이 주마다 상이하고, 대출연계 보험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고, 보험브로커와 전문 대리점이 발달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미국 은행들은 신속한 판매기반의 확보를 위해 자본금이 적은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매수 전략을 강화하고 또한 자체적인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은행을 통한 판매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명·건강보

험의 경우 2000년 은행을 통한 판매규모는 4억 달러 정도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1998년 은행을 이용한 보험판매 비중 1%에 대한 종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연금보험이 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기업성 보험(13%), 신용보험(9%), 가계성 손해보험(9%), 건강보험(3%), 생명보험(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은행을 이용한 정액 및 변액연금 상품의 판매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여, 은행을 이용한 변액연금 판매규모는 1997년 96억 달러에서 2000년 156억 달러로 3년 동안 63%가 증가하였다. 증권사의 변액연금 판매 및 생명보험상품의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유럽

전통적으로 유니버설뱅킹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그룹 내에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함께 거느리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종합금융화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³⁷, 특히 은행과 보험사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져, 1999~2001년 중 M&A의 약 70%가 국내 은행과 보험사간에 이루어졌다.³⁸

독일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사내에서 겸영하는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 제도가 19세기에 이미 보편화 되었는데, 이는 산업혁명에서 뒤진 독일 정부가 기업의 자금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은행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독일의 은행들은 증권업을 사내에서 광범위하게 겸영하고 있다. 현재 독일 은행법(Banking Act)상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은행업무(banking business)에는 일반 상업은행업무는 물론 투자은행업무도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독일의 은행업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수취 - 대출, 할인, 지급보증 - 수탁(safe custody) - 중개업무(고객계정의 금융자산을 은행 명의로 중개) - 자산운용(investment fund activity) - 유가증권인수(underwriting business) - 외환, 지로업무, 카드업무, 전자화폐 업무 |
|---|

³⁷ 금융기관간 활발한 M&A로 2004년 말 현재 유로지역의 은행 수는 6,400여 개로 지난 1995년 대비 33% 감소하였다. 반면, 2003년 말 현재 유로 12개국의 은행지점수는 167,644개로 지난 1995년의 162,074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은행간 통합과정이 판매채널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전개된 M&A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³⁸ EU지역의 은행·보험사간 인수합병은 보험회사의 은행 인수가 대부분이었으나, 2001~2002년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보험사의 은행인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상 은행의 보험사 소유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계약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은행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자본력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반면, 보험사의 은행 소유에 대하여는 독일 은행법상 은행소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 적용된다. 즉, 보험사가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감독청(Banking Supervisory Office) 및 독일 중앙은행에 예정 지분소유 수준 및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라도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20%, 33% 및 50%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감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은 보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로 제한되어 있어 보험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소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프랑스 은행들은 19세기 중엽부터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겸영하여 왔다. 그러나 은행들이 요구불예금을 장기대출에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금융공황이 발생하였으며, 1882년의 금융공황을 계기로 은행업무가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으로 분리되었다가, 1966년의 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장·단기업무의 분리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 상업은행의 증권업 겸영은 허용되고 있으나, 보험사가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984년 제정된 「신용기관의 활동 및 감독에 관한 법률」이라는 신은행법에 따라 자회사 방식의 타 금융업 상호진입이 가능해져 대형은행과 보험사의 상호 지분참여 및 업무제휴가 증대되었으며, 모회사에 의한 겸영은 금지되었다. 활발한 은행의 보험시장 진입과는 달리, 보험사들이 은행업의 추가적인 영위를 통해 수익 시현이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 등으로 인해 보험사가 은행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많지 않다.

영국의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간 경쟁제한적인 관행 및 시장구조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업무제한 등의 결과로 상업금융, 투자금융, 주택금융, 보험 및 증권 등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왔다. 금융기관들이 전통적인 고유업무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자제한 이유는 첫째,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둘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 고객으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런던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이 1986년에 제정되고,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금융빅뱅이라고도 불리는 본 개혁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율 자유화, 단일가격제도 폐지를 통한 증권업무의 종합화, 주식이나 국채의 매매시스템을 개혁하여 SEAQ도입, 증권거래소의 회원권을 외국의 기관에게 개방하는 것 등이었다.

빅뱅에 의해 증권시장의 개혁이 이루어지자, 이미 빅뱅 이전부터 증권회사의 매

수나 자본참가가 자유화되었던 영국의 상업은행과 머천트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도 영국의 주요 증권사를 매수하거나 자본참가 등으로 계열화를 진전시킴에 따라 겸업은행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예컨대, 도매금융분야는 종래 상업은행이 주도하였으나 증권회사가 CP나 단기회사채를 이용하여 동 분야에 침투함으로써 경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투자업무분야에서는 과거 증권회사, 보험회사, 연금기금, 신탁회사 등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투자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은행과 증권회사가 주로 자회사를 통하여 거의 모든 분야의 투자업무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빅뱅에 의해 은행이 대거 증권업으로 진출하자 영란은행은 증권업 영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자회사를 통한 경우나 직영의 경우와 동일하다는 인식하여 직영도 허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보험업 진출사례는 없었다.

영국에서 은행의 보험인수는 1982년 보험회사법 제16조의 타 업무 금지규정의 반대해석 등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영국의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은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은행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은 보험사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데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982년 보험회사법에서 모회사에 의한 은행업 진출을 금지시키고 있는 EC의 「생명보험 1차 지침」을 준용하여 보험사의 직접 겸영은 규제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영국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요건은 1)보험사가 100% 출자한 은행일 것과 2)영란은행(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 설립인가를 받을 것 등 두 가지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영란은행은 은행의 규모가 모회사인 보험사보다 크지 않게 할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환경 등의 급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보험사와 자회사인 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17>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겸업화 관련 규제내용

| 국가 | 내 용 |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과 증권업 사내 겸영 - 은행의 보험업 영위를 위해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운영 - 보험사의 은행소유는 독일은행법상 은행소유 요건 적용. 보험업 영업은 보험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로 제한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과 증권업 사내 겸영 - 은행과 보험사의 상호 지분참여 및 업무제휴 증대, 모회사에 의한 겸업은 금지 - 보험사의 증권업 영위는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 가능 |

| | |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증권업 직영 가능하나 대부분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 영위 - 은행의 보험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나 보험판매는 금지되지 않음 - 보험사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데 대한 법적 제한규정 없음 |
|----|--|

(1) 증권사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

1980년대 후반 주요 은행이 보험산업으로 진입하였다. 독일 Deutsche Bank의 경우 1989년 Deutsche Bank Life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³⁹ Dresdner Bank의 경우 독일 최대보험사인 Allianz와 상호 교차판매 계약 체결을 계기로 보험업 진입을 시작하였다. Dresdner Bank의 보험업 진입은 대형 은행과의 합작을 모색한 Allianz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은행의 보험시장 진입과는 달리 보험사가 은행업으로 진입한 사례는 많지 않다. GAN은 프랑스 정부가 11개의 국영 보험회사를 합병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회사로, 1980년 초까지 국내 영업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치중해 왔으나, 생명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5년에 소매금융 은행인 CIC를 자본참여방식으로 인수하였다.⁴⁰

UAP는 프랑스 보험사로서는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발행해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다. 유럽시장의 단일화에 대비하여, 첫째 지역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산화 정책, 둘째 보험 종목별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보험료율 정책, 셋째, 은행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판매망 강화전략을 채택하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프랑스 대형 은행인 BNP의 주식 10%를 인수하였다.

<표 18> 영국, 프랑스, 독일의 보험의 은행업 진출 사례

| 업종 | 국가 및 사례 | |
|---------------|---|---------------------------|
| 은행 → 보험 | 독일) Deutsche Bank는 Deutsche Bank Life라는 자회사 설립 영국) Barclays, National Westminster, Midland, Lloyds TSB는 보험사를 자회사로 보유 | 1989 |
| 보험 → 은행 | 영국)UK Prudential이 Egg(인터넷 은행) 설립 영국)Standard Life는 자회사 Standard Life Banking Services 설립 | 1998.10 1998.1 1985 |

³⁹ Deutsche Bank Life는 Deutsche Bank의 고객 자료를 활용하고, Deutsche Bank 직원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였다.

⁴⁰ GAN그룹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산하에 보험업무를 영위하는 GAN SA와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CIC를 두고 있다. 그리고 CIC의 산하에는 11개의 지방은행이 있으며, GAN SA는 CIC와 공동으로 독일의 A&M을 벤치마킹하여 Socapi 보험판매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
|---|
| 프랑스) GAN은 소매금융은행 CIC를 자본참여방식으로 인수 |
| 프랑스) UPA는 프랑스 대형 은행인 BNP주식 10%를 인수 |
| 독일) Allianz는 Dresdner Bank와 상호교차 판매 계약 체결 |

자료: 정세창·권순일(2001), 정세창·박홍민·이정환(2002)

영국 보험사는 만기보험금의 사회 유출을 억제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은행을 견제하기 위해 은행업에 적극 진출하였다. Prudential 생명은 1998년 10월에 인터넷 전업은행인 Egg를 설립하여 인터넷 बैं킹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이와 더불어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은행을 통하여 대규모 소매은행 및 슈퍼마켓 은행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동 은행은 최신 시스템 기술과 인터넷 설계 및 경쟁력 있는 상품제공 등을 통하여 2000년 말 현재 13만명의 고객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Egg는 핵심 상품인 저축과 대출상품을 기반으로 1999년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말에 Egg/Boots 신용카드 및 회원카드를 발행함으로써 신용카드상품의 판매가 증가하였다. 이외에 생명보험회사인 Standard Life는 유럽최대의 상호보험회사로서, 1996년 10월부터 Bank of Scotland와 제휴하여 보통예금을 판매해 오다가 1998년 1월 은행자회사로 Standard Life Banking Services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하였다.

(2)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에서 특히 발달하여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비중이 약 60%에 이른다. 유럽에서의 방카슈랑스는 주로 은행의 생명보험업무에 대한 시장진출이 중심이나 손보시장에서도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가 일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의 방카슈랑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이하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성격이 은행상품과 차이가 커서 은행들이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의 보험판매 비율이 높은 국가를 보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전국적 점포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유니버설뱅킹이 일찍 도입되어 은행의 타 업무 진출이 용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은행들은 단순한 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주로 판매하여 은행원의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이 상품을 쉽게 이해하였으며, 저렴한 보험상품의 판매 등이 가능하였고, 또한 엄격한 노동법으로 인해 은행의 고용자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 방안으로서 보험상품 판매가 대안이 된 것도 방카슈랑스가 발전하게 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표 19>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비중

(단위: %, 2002년 기준)

| | 프랑스 | 스페인 | 이탈리아 | 독일 | 영국 | 미국 |
|------|-----|-----|------|----|----|----|
| 생명보험 | 61 | 58 | 57 | 24 | 12 | 10 |
| 손해보험 | 8 | 5 | 1 | 5 | 6 | 3 |

자료: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2004

독일은 일찍부터 은행과 증권신탁 업무의 겸업을 허용한 결과 동 부문에 대한 겸업화 수준은 기타 서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나 기타 금융 부문간 통합은 활발하지 못하다. 현재 독일 생명보험 시장⁴¹의 방카슈랑스 비중은 주변 국가들인 프랑스의 60% 및 이탈리아의 49.8%에 크게 못 미치는 15%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독일 금융시장의 보수성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손해보험 시장 역시 전속 대리점(67%) 및 브로커(20%)가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잡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손보상품 판매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독일 생명보험 시장 판매채널 별 비중(1999)

| 구분 | 전속대리점 | 브로커/독립대리점 | 은행 | 직판채널 | 기타 |
|----|-------|-----------|-----|------|----|
| 비중 | 50% | 22% | 15% | 10% | 3% |

자료: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2001

프랑스는 세계에서 방카슈랑스의 보급이 가장 보편화된 국가이며,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판매점유율이 60%에 이르는 등 방카슈랑스가 최대의 판매채널로서 완전히 정착하였으며, 손해보험분야에서도 방카슈랑스에 의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방카슈랑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1996년에서 2000년 까지 프랑스의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을 보면, 은행을 이용한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비중은 1980년 19%에서 1990년 39%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1%로 증대되어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상품의 복잡성과 함께 고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2000년 은행을 통한 판매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방카슈랑스 성공요인으로는 전통적 판매채널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판매비용, 프랑스 보험산업의 취약성, 그리고 의무보험의 판매에 치중한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꼽을 수 있다. 상품 측면에서 방카슈랑스의 성공 요인은 저축성 생명보험

⁴¹ 독일 보험산업의 경우 현재 수많은 보험사가 난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이 많지 않은데, 이는 계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규제환경과 과거 충분한 준비금 적립에 의한 건실한 재무력,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상호회사인데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상품 판매의 증가 추세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가운데, 세계혜택을 받는 양로보험적 상품은 고객의 수요를 유발하였으며, 또한 단순한 상품구성은 은행원들이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하기 쉬었다는 특징이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 증가에 기여하였다. 은행의 낮은 자본력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정부 정책도 프랑스가 방카슈랑스에 성공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의 4대 은행인 Barclays, National Westminster, Midland, Lloyds TSB 등도 모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으로서, 은행 등을 통하여 산하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자사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최근 영국 은행들의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 현재 정기보험의 경우는 정기보험 총보험료의 12% 정도가 은행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일시납보험의 경우는 전체 일시납보험료의 20%를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보험 시장규모가 일시납보험 시장의 11%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은행을 통한 생명 및 연금보험 상품 판매비중은 전체적으로 19% 정도로 추정된다.

<표 21> 프랑스의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

| 구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생명, 건강보험 | | | | | |
| 은행 | 59 | 61 | 59 | 60 | 61 |
| 대리점 | 11 | 10 | 10 | 9 | 8 |
| 브로커 | 7 | 7 | 8 | 9 | 9 |
| 회사직급 | 17 | 16 | 17 | 17 | 16 |
| 직판채널 | - | - | - | - | - |
| 기타 | 6 | 6 | 6 | 5 | 6 |
| 손해보험 | | | | | |
| 은행 | 5 | 6 | 7 | 8 | 8 |
| 대리점 | 39 | 37 | 36 | 35 | 35 |
| 브로커 | 19 | 19 | 19 | 17 | 17 |
| 회사직급 | 4 | 3 | 3 | 3 | 3 |
| 직판채널 | 31 | 32 | 33 | 34 | 34 |
| 기타 | 2 | 3 | 3 | 3 | 3 |

자료: 정세창 · 권순일(2001)

<표 22>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판매 비중 (영국)

(단위: mil 파운드, %)

| 구분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정기 보험 | 총보험료 | 1,996 | 2,325 | 2,682 | 3,139 | 3,124 |
| | 은행/대부조합의 판매비중 | 15% | 16% | 12% | 12% | 12% |
| 일시납 보험 | 총보험료 | 12,589 | 16,936 | 18,877 | 22,352 | 27,886 |
| | 은행/대부조합의 판매비중 | 21% | 21% | 21% | 19% | 20% |

자료: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2000*

3)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시장진입 및 경쟁제한 그리고 행정지도가 준수되었으나, 이러한 금융관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버블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사와 보험사 등 수 많은 금융기관이 도산하자, 일본정부는 일본의 비효율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게 되었다.

1993년 6월에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총 16개의 금융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 한 「금융제도개혁법안」이 제정되고 1993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통하여 타 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4월 「신보험법」의 제정으로 자회사방식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입 및 제3분야 상호진입이 허용되고, 보험중개인 제도 및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었다.

1996년 11월 하시모토 일본 수상은 "자유화(free), 경쟁의 공정·투명화(fair), 국제화(global)"라는 3대 원칙 하에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개혁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한 금융빅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

1998년 3월에는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어,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12월 1일에는 보험업법 등 24개의 금융관련 법안이 일괄적으로 입법화된 「금융시스템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뮤추얼펀드의 도입,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 허용, 증권사의 기타업무 영위 허용, 은행, 증권 및 보험사간의 업무제휴가 허용 되었다. 나아가, 유가증권의 사모, 특정사채의 인수 및 모집, 금융선물거래, 공공채의 매매, 수익증권 판매업무, 지방채, 사채 등의 모집 및 관리의 수탁 등과 같은 업무가 새롭게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보험자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관련된 규정이 정비·제정됨으로써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간의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증권사와 파산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증권사는 보험

사를 은행은 파산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는 보험사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 보험사가 은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보험사의 은행소유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보험사의 타금융업 진출이 허용되는 동시에 은행과 증권회사 등 타금융기관의 보험업 진출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2001년 10월부터 은행에 대하여 파산한 보험사에 한해서만 허용하였던 보험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완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상호진출의 틀이 완성되었다.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2001년 4월부터는 은행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직접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최근까지 일본의 은행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자금여력이 없어 보험업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와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업에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은행의 보험판매에 앞서 1999년 10월부터 증권사들의 보험판매가 허용되었다.⁴²

2004년 6월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일반 금융기관의 증권중개업⁴³ 진입이 허용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부터 진입이 허용되었다. 일반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부터 진입이 이미 허용되어 토요타 자동차와 로손 편의점 등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표 23> 일본의 금융겸업화 추진 현황

| 년도 | 내 용 |
|---------|---|
| 1993.4 | - 금융제도개혁법안 시행. 금융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타 업종 진출 허용 |
| 1996.4 | - 신보험법 제정,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손보 상호진입 |
| 1996.11 | - 금융빅뱅 발표 |
| 1998.3 | -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폐지 |
| 1998.12 | - 금융시스템 개혁법 시행: 뮤추얼펀드 도입, 은행의 투신상품 판매 허용, 증권사의 기타 업무 영위허용, 은행, 증권, 보험사간 업무제휴 허용. 보험사는 증권사와 파산은행을 자회사로 소유, 증권사는 보험사를, 은행은 파산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 |
| 1999.10 | - 보험사의 은행주식의 50% 이상 보유를 허용하여 보험사의 은행소유 |

⁴² 明治生命 과 住友生命이 日興証券에 보험판매를 위탁한 것을 비롯, 日本生命과 第一生命도 대리점 계약을 통해 판매를 개시하였다.

⁴³ 증권중개업은 기업이나 개인이 고객으로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제휴처인 증권회사에 중개하는 제도이다.

| | |
|---------|--|
| 2001.10 | 가능 |
| 2001.4 | 증권사들의 보험판매 허용 |
| 2004. 6 | -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 완전 허용 |
| 2007.4 | - 은행의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허용 - 일반 금융기관의 증권중개업 진입 허용 -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도입(예정) |

(1) 보험업과 증권업의 은행업 진출 사례

일본생명과 동경해상 등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11개사는 2002년 3월 ATM을 이용한 결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Ito Yocado ba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Ito Yocado bank에서 편의점인 Seven Eleven Japan에 설치한 ATM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및 대출 서비스 등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은행에 대한 출자 및 업무제휴는 일본 최초로 보험과 은행 업계간의 업무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생명은 사쿠라은행이 주도하는 non-bank bank⁴⁴의 설립에 자본참가 하고⁴⁵, 또한 사쿠라은행이 주도하는 일본 최초의 인터넷전업은행인 Japan Net Bank (JNB)에 출자하고 업무제휴를 체결하였다.⁴⁶ 일본생명은 생명보험자산과 연금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가증권관리 및 결제, 효율적인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리스크관리 등 고부가가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三菱신탁은행, 東洋신탁은행, 독일은행 및 明治생명과 자본제휴 방식으로 2000년 4월에 일본 Master Trust 신탁은행을 설립하여 신탁은행업에 진출하였다.⁴⁷

증권의 은행업 진출의 예로 일본의 다이와홀딩스의 경우 다이와증권은 retail 부문에 특화하고, 다이와증권 SMC는 다이와증권의 도매부문(wholesale) 및 IB부문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의 기업 금융 부문을 통합하였다. 다이와의 지분은 60%, 미쓰이스미토모의 지분은 40%에 달한다.

⁴⁴ non-bank bank는 예금 등을 받지 않고 소비자대출(consumer loan)등 여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일종의 여신전문기관이다.

⁴⁵ 운영방식은,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내에 소형단말기와 ATM을 설치하여 대출심사와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출은 무담보대출로서 고객이 편의점내의 소형단말기를 통하거나,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대출심사 신청을 하고 심사 후 단말기에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편의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쿠라은행의 별도 ATM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⁴⁶ 일본생명의 고객에게 인터넷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은행서비스는 물론이고 보험료 납부, 보험금 및 배당금 지급 등의 보험서비스를 동시에 받도록 하고 있다.

⁴⁷ 새로 설립된 신탁은행은 현재 동 신탁은행 설립에 참여하는 5개 금융기관의 연금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업무와 유가증권자산의 관리업무,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 연금자산데이터의 통합관리 업무 및 자산 전체에 대한 리스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표 24> 일본의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

| 업종 | 사 례 | |
|---------------|---|--------------------------|
| 증권 → 은행 | - 다이와증권 SMC는 다이와증권의 도매 및 IB부문과 미쓰이스미토 모은행의 기업금융부문 통합 | |
| 보험 → 은행 | - 11개 생,손보사 Ito Yocado bank에 출자 및 업무 제휴 - 일본생명은 사쿠라은행이 주도하는 non-bank bank의 설립에 자본참가 일본 최초 인터넷 전업은행인 Japan Net Bank(JNB)에 출자 및 업무제휴 - 일본생명은 자본제휴방식으로 Master Trust 신탁은행 설립 | 2002.3 2000.4 |

자료: 김형원·김승년(2004), 김형기·김상의·최재현(1999)

4) 아시아

OECD 회원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방카슈랑스 현황은 <표 25>에 나타나 있다.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보험사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에 비하여 은행의 보험사 지분 소유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이 보험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5개 국가들은 보험사의 은행 지분 100%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은 자회사 설립에 있어서도 보험사의 은행자회사 설립에 비하여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에 관대하다. 브르나이 등 9개 국가들이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필리핀 및 싱가포르에서만 보험사의 은행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상품판매의 경우에서도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가 보험의 은행상품 판매에 비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중 보험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는 싱가포르로 은행의 보험자회사 또는 보험사의 은행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및 보험사의 타 금융상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어,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의 보험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표 25> OECD비회원 아시아 국가들의 방카슈랑스 현황

| 국가 | 지분보유 | | 자회사 | | 상품판매 | |
|-------|----------------------|--------------------------|-------------------------|------------------------|-----------------------|--------------------|
| | 보험사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 은행의 보험사지 분보유한 도 | 보험사의 은행자회 사 설립 | 은행의 보험자회 사 설립 | 보험사의 보험이외 상품 판매 | 은행의 보 험상품판 매 |
| 브루나이 | n.a. | n.a. | N | Y | N | N |
| 홍콩 | 100% | 100% | Y | Y | Y | Y |
| 인도 | 2% | 50% | N | Y | N | Y |
| 인도네시아 | 100% | 100% | Y | Y | N | Y |
| 마카오 | 100% | 100% | Y | Y | - | Y |
| 말레이시아 | 20% | 100% | N | Y | Y | Y |
| 필리핀 | 100% | 100% | Y | Y | N | Y |
| 싱가포르 | 100% | 100% | Y | Y | Y | Y |
| 스리랑카 | 5% | 20% | N | N | N | N |
| 대만 | 5% | 0% | N | N | N | Y |
| 태국 | 10% | 10% | N | N | - | - |
| 베트남 | - | - | N | Y | N | Y |

자료: Ishi Hisaya (2001)

5)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 사례

(1) 주요국의 산업과 금융의 분리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과도하게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한 결과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를 초래하였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⁴⁸ 미국은 1993년 글래스-스티걸법에서 은행이 투자의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면서도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되었다.⁴⁹

미국에서는 일반기업이 은행의 의결권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회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할 경우에

⁴⁸ 20세기 초반 은행은 금융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antillo(1988)는 1912년 GDP의 56%에 해당하는 기업의 이사회에 은행가가 참석하여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⁴⁹ 또한 금융서비스현대화법하에서 금융지주회사는 FRB가 금융활동에 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예금기관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금융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일반기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보고 동 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금융관련업무로 제한함으로써, 일반기업이 은행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실제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은행지주회사나 국법은행의 경우 의결권 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혹은 의결권과 비의결권 주식의 25% 이내에서 일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나, 은행가가 이사회 멤버로 참석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를 제한하였다(Santos 1998, Krainer 2000).

미국에서 예금기관과 산업의 결합의 대표적인 예는 저축대부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단일저축기관지주회사(unitary thrift holding company)⁵⁰는 다양한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허가되었으며 단일저축기관의 비금융 자회사 활동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⁵¹ 그러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는 1999년 5월 이후에 인가된 단일 저축기관 지주회사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단일저축금융기관 지주회사의 신규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에의 진출을 금지하였다.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은행과 산업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여, 독일에서와 같이 하우스뱅크(Hausbank)제도와 기업출자 등을 통해 은행이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일반 사업법인의 은행업 진출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 EU국들은 비금융기관에 투자될 수 있는 은행자본의 비중을 제한하는 EC2차 은행지침에 따르나 실제로는 제한이 없다. 일반사업 법인의 은행업 진출도 인정하며 진출방법도 기존 은행 인수와 신규 은행인가를 모두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는 일반기업이 은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비율에 따른 당국의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기준은 통상 신규인가 신청과 동일하다. 영국의 일반기업은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하에 은행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반독점법에 의해 은행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래은행 제도와 계열기업간 상호주식보유(cross ownership)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일반기업의 은행소유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어, 일반기업이 은행업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은행업 인가기준을 적용받을 뿐 적격성 심사는 없다. 최근까지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은 파산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했으나 최근에는 Ito Yocado나 Sony와 같은 비금융 기업그룹의 금융결제업 내지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을 허용한 바 있다.

⁵⁰ 1개의 저축기관만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⁵¹ 포드 자동차회사나 시어스(Sears)회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단일저축회사 관련 법조항의 맹점을 이용하여 1980년대 금융산업에 진출한 바 있다. 1997년 중 1/4 가량의 단일저축기관이 상업적 지배력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보험의 판매 및 인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6>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주요국 규제 현황

| | 미국 | 일본 | 영국 | 프랑스 | 독일 |
|------------------|-----|----------|--------------------|---|---------------------|
|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 | 금지 | 금지조항없음 | 허용 | 허용 | 허용 |
| 기존은행 인수에 대한 지분규제 | - | 가이드라인 없음 | 10%이상 주식 보유시 적격성검사 | 5%이상 보유시 신고의무. 보유비율이 10%, 20%일 경우 각각 허가 기준 이행 | 10%이상시 주요 주주 적격성 검사 |
| 은행보유기업 수 | 20개 | n.a. | n.a | 80개정도 | 20개정도 |

자료: 김정훈(2000)

(2) 비금융기관의 은행업 진출 사례

그 동안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영국, 일본 등에서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는 금융업종간 겸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또한 산업화 시대가 진전될수록 경쟁강도가 심화되면서 종래의 사업 방식으로는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을 한 많은 기업들이 동종 및 이종 산업간 전략적 제휴와 합병 등을 추진한 때문이다. 특히, 금융업은 기업의 자금 조달 등 기업 경영에 있어 핵심업무이기 때문에 기업이 금융기관을 자회사 형태 등으로 들 경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을 다각화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이미 많은 기업에서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또한, 최근의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은 고유사업의 성장이 정체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GM(General Motors), Ford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과거에는 고객에게 할부 판매형태의 신용공여를 통하여 고객의 일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 목적으로 할부금융을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시장의 포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할부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다. Volkswagen, DaimlerChrysler 등과 같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직접 은행을 설립하여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을 모회사의 업종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미국, 독일 및 일본에서는 자동차 등 제조업체가 금융업에 주로 진출하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점포망 제휴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판매채널로 제공하거나 금융업 위주의 소매유통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미국 제조업체는 오래 전부터 가전,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업에 진출하였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GM(General Motors)은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을 통하여, Ford 역시 1959년 Ford Motor

Credit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자동차금융, 자동차보험상품, 모기지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Boeing의 자회사인 Boeing Capital은 Boeing 그룹 내 여타 계열사의 사업 지원과 항공기, 위성, 방위시스템 등에 대한 융자,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GE는 100% 출자 중간 지주회사인 GE Capital Service를 통하여 은행업과 증권업을 제외한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보험, 리스 등에 걸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⁵²

일본의 경우 제조업체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일본전기·전자회사인 Sony가 2001년 4월 설립한 인터넷 전업은행인 Sony Bank로 후술하는 Ito Yocado Bank에 이어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두 번째 은행이다. Sony는 이미 Sony Finance, Sony Life Insurance, Sony Assurance, Sony Card 등 소비자금융,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Sony Bank의 설립은 Sony가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ony Bank는 Ito Yocado Bank와는 달리 예금, 결제, 투자신탁, 카드론, 주택대출 등은행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 증권, 투자신탁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망라되는 종합금융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비금융기관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미국에서의 Wal-Mart와 같은 소매유통업체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자사의 매장에 인스토어뱅크(In-store Bank)를 설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인스토어뱅크는 유통업체의 매장에 설치된 금융기관의 미니점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이며 엄격한 의미에서 금융업진출이라고는 할 수 없다.

<표 27>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사례

| 모회사 업종 | 진출 금융업종 | 진출방식 | |
|-----------|--------------------|--|--|
| 제조업체 | -할부 금융업 -은행업 | -은행설립 -소매금융회사 설 립 -인터넷전업은행 설립 | -미국: GE Capital Service, GMAC, Boeing Capital -일본: Sony Bank, Toyota Financial Services -독일: Volkswagen Bank Direct, BMW Bank, DaimlerChrysler Bank |

⁵²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 자회사가 없는 것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증권, 보험업 및 FRB가 허가한 금융업 이외의 제조업 등의 비금융업 영위가 제한되는 때문이다. 증권부문은 1996년 증권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수익성 악화 등으로 1994년 매각한 이래 영위하지 않고 있다.

| | | | |
|------------|------|------------------------------|--|
| 소매 유통업체 | -은행업 | -은행설립 -단순제휴에 의한 판매채널제공 | -영국: Sainsbury' s Bank, Tesco Personal Finance, Marks&Spencer Financial Services -일본: Ito Yocado Bank -미국: Wal-Mart |
|------------|------|------------------------------|--|

자료: 장진성 (2005)

영국은 소매유통업체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는 단계를 뛰어넘어 직접 금융업에 진출한 소위 슈퍼마켓은행(Supermarket Bank)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국가이다. 슈퍼마켓은행은 소매유통업체의 점포망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여 고객접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방식 중 가장 주목 받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는 Sainsbury' s Bank, Tesco Personal Finance, Marks&Spencer Financial Services 등으로 이들 금융기관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⁵³

일본 최초의 슈퍼마켓은행인 Ito Yocado Bank는 유통그룹인 Ito Yocado가 7-Eleven Japan과 공동 출자하여 2000년 4월 정식으로 은행면허를 취득함으로써 2001년 5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Ito Yocado Bank는 Ito Yocado와 7-Eleven의 매장에 설치된 4,000여대의 ATM과 인터넷, 전화 등 전자채널만을 이용하여 입출금, 자금이체, 공과금 납부, 증권계좌 결제, 보험료 납부 등의 결제서비스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대출, 신탁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3) 산업과 금융의 결합과 규제

산업과 금융의 결합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한편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 및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고객의 금융서비스편의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산업자본에 참여할 경우 나타나는 폐해가 더욱 크다는 확신이 미국 등에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은행이 산업자본에 참여할 경우 은행이 과도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과 은행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⁴

⁵³ 영국금융시장에서 슈퍼마켓은행의 시장점유율은 개인대출 2.6%, 저축 1.6%, 신용카드 8.9% 등으로 추정된다.

⁵⁴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기업의 경쟁자에게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는 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대출을 거부한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상회한다면 수지가 맞는 행위이다. 이러한 논거는 기업에 대한 물품공급자나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기업의 경쟁자에 물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나 소비자에게는 자본공급을 철회하는 경우 등의 예에도 적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가장 큰 폐해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이 제공되며 또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작용할 때는 전액보호의 효과를 갖는다. 금융안전망의 또 다른 면은 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결제업무는 경제활동의 근간인 동시에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과 예금보호기구, 나아가 금융시장 및 경제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주로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은행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수신기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규제당국으로부터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또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의 안정장치도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안전망은 은행의 부채의 위험도를 줄여서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보조금 효과는 공공으로부터 은행으로 자금이 단순히 이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은행이 지주회사내의 자회사로 있으며 모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은행을 빠져 나와 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에게 이전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⁵⁵

더욱이 은행업에 진입한 이업종(모회사)이 금융당국이 인식하지 못하는 리스크 - 새로운 사업 실패, 수요구조의 급격한 변화, 대규모 환투기 실패 등 금융기관과 다른 일반회사의 사업리스크 - 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자회사인 은행의 경영위기로 연계되어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도 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자격 미달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 되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입과 관련하여 바젤위원회는 1997년 ‘효율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을 공표하여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독기관이 은행의 소유구조, 경영진현황, 업무계획, 재무상태, 내부감사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업 인가신청을 기각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표 28>)

일본에서도 최근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일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금융재

용될 수 있다.
⁵⁵ 지주회사는 또한 보조금이 지급된 자금을 자회사인 일반기업에게 이전할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자회사의 부실채권을 은행자회사에게 이전시키고, 은행은 비싼 가격에 그 자산을 구매하거나 혹은 자회사에게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하로 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다.

생위원회는 일반기업이 은행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흑자를 달성하도록 하고 모기업이 예금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반기업의 은행 설립 인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면허심사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 모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리스크 차단책을 강화하기 위해 모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권한을 법제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검토중이다.

<표 28> BIS 은행감독 핵심원칙 주요내용

- | |
|---|
| <p>(1)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기업의 신청을 기각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p> <p>(2) 면허 부여과정에서 최소한의 은행의 주주구조, 이사 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p> <p>(3) 이때 주요 직접 및 간접 주주가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주요 주주란 주식 비율 10% 이상의 소유자를 말함)</p> <p>(4) 주요 주주의 재정능력과 필요 시 추가적인 자금원조 제공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p> <p>(5) 기존은행의 소유권이나 지배력의 제3자에의 양도가 (1)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당국에 의한 중지명령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p> |
|---|

IV. 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겸업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겸업화가 왜 필요하며 겸업화에 부수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주체로서, 그 주된 기능은 현재의 소비나 투자수준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잉여자로부터 자금이 부족한 자금부족자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지급결제기능의 제공, 유동성의 제공, 정보의 생산, 위험의 공유 등이 금융기관과 금융업의 주된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금융시장은 거래의 대상이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실물거래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며 거래주체간 또는 시장간 자산의 급격한 이동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외부효과가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빈번한 수요가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라는 거래의 특성상 고객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경쟁력 요소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은 규모의 경제성이 큰 산업이고 규모의 거대화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독과점의 여지가 커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거래는 일반상품거래와 달리 그 거래가 단기간내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 등의 제공과 이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완결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는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주체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할 경우 흔히 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원활한 금융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현상이 빈번히 관찰된다(Akelof(1961)).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외부효과(externality), 공공재(public good)의 문제, 독과점(monopoly or duopoly)의 문제, 정보비대칭의 문제(information asymmetry) 등이 지적되곤 하는데 특히 금융시장은 실물시장에 비해 이러한 시장실패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의 경우 산업분야에는 없는 다양한 규제장치와 감독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금융업무영역의 규제도 이러한 규제체제의 일부이다.

물론 금융시장과 산업에 있어서도 최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앓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란 시장에서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되며, 규제의 부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이 보다 큰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행위의 성격상 그 비용과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항상 최적의 규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본 장에서는 금융중개와 위험공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 증권 및 보험업의 특성을 비교하고,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겸업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겸업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1. 금융업별 특성

겸업화란 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러한 금융업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 기업과 달리 업무영역상의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와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본 절에서는 우선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주요주체로서 은행, 증권 및 보험업 및 이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비교한다.

1) 은행업

은행은 다수 예금자의 단기성 저축을 장기성 대출자산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자금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과 함께 현재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에는 없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금융기관이다. 최근 부분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생겨나고 있지만, 결제서비스는 여전히 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으로서 이는 은행을 여타 비은행금융기관과 다른 ‘특수한 존재’로서 특징짓게 한다.

한편, 이러한 결제기능은 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이 갖지 못한 정보취득상의 우위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정보의 획득인 바 은행은 예금이나 당좌대월과 같은 결제성 상품을 통해 기업의 자금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금공급기능에 있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수의 국가에서 은행에게만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동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외부효과(externality) 때문이다. 즉, 조달된 자금을 대해 언제라도 지불의무를 갖고 있는 반면 조달된 자금의 매우 일부분만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특성상 지급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예금자 등은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공황상태(panic)에 빠져 예금의 동시인출(bank run)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시스템의 연계에 따라 1개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결제위험이 여타 은행으로도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기능을 은행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나 비명시적인 정부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의 지급결제기능은 통화창출기능을 통한 유동성의 제공과 확산, 그리고 신용정보의 생산 및 축적기능에 있어서도 여타 비은행금융기관과는 상당한 능력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수신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네트워크(점포망)는 고객에 대한 자연독점력을 가짐으로써 고객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은행에 포획되는(captivated) 현상을 나타내며 이는 증권업이나 보험업의 경우에 비해 보다 강한 성격을 지닌다.

물론 최근 증권사 등의 비은행금융기관도 MMF, CMA 계좌, WRAP account 등을 통해 부분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단들도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결제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은행의 지급결제기능과 중앙은행 등에 의한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 등 공적 예금보호기능 등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낮은 금리의 요구 불예금이나 저축성 예금을 은행에 예치할 유인이 있다. 이는 은행에게 고정적 수익의 원천과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게 되므로 은행의 공공적 역할론을 부과하는 동시에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은행의 고객들은 자신의 저축자산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은행선택에 있어 은행의 경영상태 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자금공급자에 의한 시장규율과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은행 경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의 가능성을 높인다.

2) 증권업

증권업은 주로 유가증권을 통해 자금의 잉여주체로부터 자금부족주체인 기업에게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때 발행된 유가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 조성된 유통시장에서 투자자간의 유가증권거래를 지원하는 중개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자산관리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증권업은 은행에 비해 자금공급의 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기관의 위험부담이 적으며 자금조달을 위한 광범위한 점포망의 유지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자금중개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벤처캐피털, 기업인수합병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과 증권업간의 중요한 차이는 정보생산기능의 차이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이들간 자금을 공급하는 계약의 형태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전적 정보생산능력이 우월한 반면 자본시장은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사후적 정보생산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경서-신보성(2004)).

예를 들어, 주식은 가장 대표적인 자본시장 상품으로서 자금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채권매입이나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에 수반되는 위험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가치가 변할 수 있는 위험자산의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도에 따라 투자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므로 투자자는 결국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고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대상기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생산할 유인을 갖게 된다.

반면에 자금공급자로서 은행은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한(즉, 자기자본을 통해 경영부실의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있는 한) 기업가치의 변화가 자신의 채권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적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다만 기업이 재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채권자로서 경영에 개입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자본시장의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2 차 거래시장(유통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은행의 대출과 같은 계약형 자금공급기관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유통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대출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채권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를 여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사전적으로 대출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유인을 줄이게 된다.

자본시장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미래의 상황(contingency, 또는 상태 state)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지는 매우 많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점에서 간접금융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이들 자본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의 상황에 따라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의 상황은 무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의 수도 무한하다. 이러한 상품의 다양성은 소위 금융상품의 수가 상태의 수에 같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완전시장(complete market)을 가능케 하고 이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참여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에 은행과 같은 간접금융기관은 안전한 예금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조달된 자금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위험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3) 보험업

보험업의 주된 기능은 상황조건부계약을 판매하여 고객의 위험을 통합하고 이전 시킴으로써 고객의 전체적 후생을 제고하는데 있다. 보험사는 경제주체들의 서로

다른 비체계적위험을 통합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이는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부채는 매우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장기자금의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보험업은 여타 금융업에 비해 고객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보험상품은 상황조건부계약(state-contingency contract)의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상황의 숫자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각각이 발생할 가능성과 확률 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대리인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가입 고객과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고객만이 알고 있는 사적정보이므로 주로 나쁜 건강상태를 가진 고객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보험사의 수익의 감소요인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일단 가입한 후에 건강을 잘 돌보지 않거나 자동차를 험하게 다루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험업의 특성이다.

특히 보험상품이 고객의 위험에 대한 태도나 재산상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는 복잡한 장기금융상품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보험사와 고객간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다른 금융업에 비해 큰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보험업은 은행이나 증권업에 비해 상품의 판매를 위해 고객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상당한 판매시간을 요하며 이는 보험업의 채널비용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보험업은 은행과 같이 단기성 확정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객자금의 대량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동성 위기로 인한 파산의 가능성은 낮다. 반면에 고객에 대한 부채의 만기가 장기인 반면 조달된 자금의 상당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를 가진 채권이나 대출 등에 운용된다는 점에서 조달과 운용의 불일치(mismatch)로 인한 이자율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이는 보험사의 재무적 상태를 급변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

2. 바람직한 겸업화의 방향

최근 업무영역상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주로 증권업과 보험업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국내 금융산업에 있어 겸업화의 특성상 은행은 자회사 방식이나 지주회사 방식을 이용하여 증권, 투신 및 보험업에 진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러한 방식을 통한 겸업화에 별다른 장애요인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증권사의 경우 규모의 한계로 인해 은행 자체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은행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겸업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는 은행을 인수하거나 은행업에 진출하는데 있어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고, 보험사의 소유구조상 산업자본이 주된 지배주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은행의 소유규제 (4% 이내 또는 10%까지 보유하되 의결권 행사 제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앞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금융업의 업무적 성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일반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첫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둘째,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상품규제,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상의 규제, 건전성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 가운데 업무영역규제가 금융의 겸업화 정도를 규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만 충족될 수 있다면 업무영역의 완화와 추가적인 겸업화가 가능하며, 동일한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규제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는 것도 최적규제수준의 달성을 위해 고려될 사항이다. 예를 들어 겸업화를 위한 업무영역규제의 완화시 진입규제를 강화하거나 내부통제제도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물론 시장규율기능이 작동하는 정도에 따라 규제와 감독의 정도와 범위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 금융업은 정보비대칭성 및 독과점성으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가능성이 높아 규제와 감독이라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지만 후자도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양자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기초로 국내금융산업에 있어 추가적 겸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1) 은행, 증권, 보험간 내부겸영의 가능성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현 제도하에서 지주회사 형태에 의한 업무영역 확대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결국 은행과 여타 금융업간 겸업화 논의의 핵심은 본체(in-house)를 통한 겸업화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에 은행과 증권 및 보험의 고유업무(core business)를 하나의 본체에서 겸영하는 것은 신용위험, 이자위험, 시장위험, 운용위험 등 각 고유업무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위험들의 결합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와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이 과도히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의 끼워팔기 등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가 보다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체내 겸업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예금보호 등을 기초로 조달된 고객예금이 주식인수업무 등에 운용될 경우 무위험 저축수단의 공급자로서 은행의 역할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고객은 시장규율기능이 약하는 점에서 은행과 증권이 결합에 따른 금융기관과 고객간 이해상충문제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과 보험상품의 판매에 의한 자금조달도 그 만기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 겸업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정책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매우 엄격한 계정의 분리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차단벽(chinese wall) 및 방화벽(fire wall)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와 감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혁신과 다양성에 바탕한 증권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는 반면, 은행은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권역에 비해서도 은행에 강력한 건전성 규제가 부과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업무의 핵심적 성격에 있어 일반적으로 은행은 신용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보험사는 금리위험과 같은 시장위험 및 사고율이나 사망률 예측 등에 기인한 보험위험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증권사는 시장위험과 함께 파생상품 운용 등과 관련된 대리인위험, 주식시장 거래정도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변화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관리하는 내부조직의 문화나 인센티브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 이를 모두 한 조직내에서 수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내부겸영시 금융기관 설립과 관련된 인가기준설정 및 제도의 운용,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 기준 및 이의 운용, 부실화시의 퇴출기준 및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감독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각 업무영역에 수반되는 위험의 성격이 매우 상이한데 이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간 추가적인 겸업화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 기능과 업무영역에 있어서의 겸업화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다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겸업화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은행의 증권업무 확대

가. 현황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 중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상업은행의 투자은행화의 이슈이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상업은행이었던 J.P. Morgan 은행과 Bankers'

Trust 은행은 80년대 초부터 국공채 인수업무 참여 등을 기화로 본격적인 투자는 행화를 추진함으로써 80년대 말에는 전체 수익의 60% 이상을 비예대업무 부문에서 획득하는 변화를 이룬 바 있다.

국내은행의 경우 증권인수관련 업무는 현재 국공채 인수 및 매출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은행은 국채전문딜러(PD)로서 국채인수에 참여하는 반면에 일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인수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밖에 일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 기업인수합병 업무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불특정신탁 등을 통하여 일부 자산운용업을 내부적으로 겸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정책방향

은행의 입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것이나 동일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나 채권으로서 자산의 성격은 유사하다. 오히려 대출은 만기까지 회수하거나 유동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이 높은 편이며 회사채는 발행기업의 신용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시장에서의 매매를 통해 신용위험의 부담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변동 등에 따른 시장위험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경영위험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시스템 리스크의 관점에서 은행의 회사채 인수업무를 금지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한편, 양 업무의 동시 취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 수익의 안정성 증가효과, 주고객인 기업입장에서의 편의성 증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회사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은행은 기업과의 협의 등에 의해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여 시장위험으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은행간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은행이 부담했어야 하는 잠재적 부실위험이 전가되는 문제도 나타난다. 결국 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위험을 시장으로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양 업무의 성격상 평가보상체제가 상이해야 하는 등 조직문화상의 차이가 요구되는데 한 기관내에서 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가의 의문점을 제기된다. JP Morgan의 경우도 궁극적으로 완전 투자은행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Bankers' Trust를 인수한 Deutsche Bank나 SSB를 인수한 Citi Corp 등은 자회사 방식 또는 지주회사체제 임에도 불구하고 양 조직간 문화적 차이 등으로 내부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확대하는 겸업화 정책을 선택할 경우 대출과 유가증권인수행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도입과 외부감독기능의 정착을 전제로 양자 간 업무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조직내부의 문제점 해결은 내부 경영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선택의 문제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3) 증권업의 은행업 확대

가. 현황

국내 증권사가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행업무의 대표적인 것으로 대출업무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대출업무는 예금수취기관과 여신전문기관의 핵심업무이며, 보험사는 계약대출 및 부분적인 일반대출을, 증권사는 유가증권담보대출 또는 인수자금 금융 등을 통해 겸영하고 있다. 또한 2005년 6월 증권사 및 보험사가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는 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권사 입장에서는 향후 신탁업을 겸영하게 될 경우 신탁재산의 대출운용 등을 위해서 대출업무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현재 중금사의 CMA와 자금운용방법, 부가서비스 등이 유사한 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하고 있으나, 동양중금증권의 CMA를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상태로서 동계좌를 예금보험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손상호 등(2005)).⁵⁶

나. 정책방향

대출업무는 기존의 증권사가 해 오던 자금공급 기능과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 대출은 보다 고정적인 신용공급기능이라는 점에서 유동화가 쉽지 않고 기업의 신용변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증권사는 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인 위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출을 통한 신용위험의 부담은 증권사의 입장에서 새로운 성격의 위험이다. 따라서 증권사의 대출업무 확대에 따른 고려사항은 첫째, 대출업무는 이에 수반되는 사전적 신용위험의 분석과 사후적 신용위험의 관리가 중요한데 증권사가 과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조직 및 내부관리체제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둘째, 유가증권발행과 대출업무를 동시에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이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⁵⁶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는 전용 MMF, RP, 채권,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적립식펀드 투자와의 연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 통신료 및 공과금의 자동납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증권사의 위험증가 문제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사가 예금과 같은 확정형 상품을 통한 수신이 없고 결제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증권사의 위험증가가 시스템위험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의한 위험수용능력도 은행보다 오히려 우월한 편이다. 특히 대출의 유동화 현상 등 유가증권 개념의 확대로 사실상 대출과 유가증권 인수를 통한 자금공급기능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추세 하에서 굳이 대출을 별도의 업무영역으로 구분할 필요는 감소하고 있다.

두번 째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은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출업무에 추가하여 유가증권인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빨리 획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위험을 시장으로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양 업무의 동시 취급에 따른 시너지 효과, 증권사 수익의 안정성 증가효과, 주고객인 기업입장에서의 편의성 증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은행과 증권사간 대출 및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확대하는 겸업화 정책을 선택할 경우 동일한 기업에 대한 대출과 유가증권인수행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전제로 양자간 업무확대를 형평성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증권사 CMA 의 예금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예금보험은 사실상 그 용어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금의 대량인출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와 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보호가 본질적 기능이다. 따라서 특정 금융상품을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는 대상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발생 및 이의 확산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실적상품의 경우 약속된 확정수익의 즉시적인 지급의무가 없고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실적운용상품에 대해 예금보험이 적용될 경우 과도한 위험추구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Kaufman(1996)).

은행의 경우도 고객예금으로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이 대출 등 위험자산에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의 변동성 측면에서 CMA 의 운용수익이 은행의 대출 등에 기초한 수익보다 위험이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의 경우 운용수익의 수익률에 관계없이 예금자를 보장한다는 특성을 갖는 반면 증권사 CMA 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예금과 CMA 의 차이는 운용자산의 특성에 있다기 보다는 확정적 수익의 지급보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한편, 증권사내에는 은행과 달리 예금보험이 되는 상품이외에 고정적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들이 존재하며 증권업의 특성 자체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고객

을 대상으로 내부조직과 경영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CMA 상품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 상품의 판매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정이 여타 예금보험대상이 아닌 증권사의 자산계정과 엄격히 분리되는 차단벽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충분한 자본건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이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가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경영위험을 CMA 상품에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증권사의 경영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내부통제체제와 규제의 부과는 증권업이 갖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CMA 에 대한 예금보험적용은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증권산업내 경영확대

가. 현황

국내 증권산업은 현재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상호겸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자산운용업은 다시 자산운용업과 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국내 증권회사가 겸영 가능한 장내파생상품 업무는 주권 및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경우 뿐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증권회사가 겸영 가능한 장내파생상품 업무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주권 및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에 국한)”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법규상 증권회사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장내파생상품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것이다.

증권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요건 또한 은행에 비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다. 먼저 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외파생상품이 외국환업무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 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된 은행은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자동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8 조, 동시행령 제 14 조). 반면에 증권회사가 장외 파생상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은 종합증권사로서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자기자본 3 천억원 이상으로 은행에 비해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증권사의 경우 업무영역이 외국에 비해 매우 협소한 주된 원인은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인 개념으로 유가증권을 정의하고 있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유가증권의 포괄적 개념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의 여차피 유가증권에 기초한 자금공급과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상품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즉,

은행 등의 대출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고 있는 현실은 양자간의 구분을 의미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국내의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거주의적 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품은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유가증권 정의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은 다양성과 혁신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상품조합을 만들어낼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열거주의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 법규에서 언급되지 않은 신상품의 등장이 어려워짐으로써 금융혁신이 저해되는 것이다.

또한 열거주의 방식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규에서 열거되지 않은 상품이 등장할 경우, 동 상품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나. 정책방향

증권사의 선물업 겸영은 즉시 허용될 필요가 있다. 양자의 겸영시 증권사의 시너지 효과로 수익기반이 확대되고 경영위험이 감소하는 반면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가 확대되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증권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증권업과 선물업 겸영에 대한 법률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의하면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누구나 선물업을 영위할 수 있고 증권회사의 장내파생상품 업무 취급에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도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이 요구하는 자본금 및 내부통제 요건만 갖추면 증권회사는 장내파생상품 업무를 제한 없이 영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가증권지수선물, 유가증권옵션 등은 증권업의 고유업무로 증권회사가 당연히 영위할 수 있으며, 여타 금융선물 및 상품선물은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신고를 통해 겸영 가능하다.

한편, 증권업에 대해 금융자산을 기초로 하는 모든 종류의 장내파생상품 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이 현재 법에서 정의된 유가증권의 수직적 확대(vertical spanning)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회사가 이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장내파생상품을 유가증권과 구분하여 취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파생상품을 통해 모든 종류의 현금흐름(payload)을 모사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가증권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장내파생상품업무의 취급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유가증권의 개념확대로 대출과 유가증권인수를 통한 자금공급간의 구분이 약화되면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 취급 등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단, 거래이행성을 높이기 위해 취급 금융기관에 일정수준의 자기자본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권회사에 신용파생상품을 불허한 이면에는, 여신행위가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고유업무는 여신행위 자체가 아니라, 비유동적인 대출자산을 고도의 유동성을 갖는 예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Diamond and Dybvig(1983)). 따라서 증권사의 신용파생상품의 취급 여부는 여신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에 따른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문제가 얼마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증권 및 선물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2000 년 상품선물현대화법,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⁵⁷ 영국의 경우에도 적격 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업무는 인가를 통해, 그리고 유가증권 이외의 금융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경영할 수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보다 광의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의 개념 조차도 유가증권의 개념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을 사전에 예상하기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을 단기간 내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본적인 유가증권을 열거한 후 해당 유가증권의 수평적 확대(horizontal spanning) 및 수직적 확대(vertical spanning)도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 개념의 수평적 확대란, 기본적으로 열거된 유가증권들의 집합(group) 또는 이에 근거한 지수(index)를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유가증권 개념의 수직적 확대는 기본적으로 열거된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과 선물 등을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이다. 유가증권 개념을 수직적으로 확대할 경우 옵션에 대한 옵션, 옵션에 대한 옵션에 대한 옵션 등도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자산운용 경영, 단독운용신탁상품의 취급 등은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업무가 증권사의 여타 고유업무와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리인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으며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제가 작동할 것인 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동 업무의 겸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⁵⁷ 단, 상품선물현대화법(CFMA)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이 적격계약당사자(eligible contract participant)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격계약당사자란 금융기관, 대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고 보유자산이 USD1,000만을 초과하는 개인이다.

5) 보험의 은행업 확대

가. 현황

보험사의 은행업 확대로는 예금상품의 직접 제공, 또는 이의 판매 대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라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로 인해 보험사들의 수지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보험사의 은행업무 취급(assurbanking)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증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업에서도 신탁업 진출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나. 정책방향

방카슈랑스 또는 어슈어뱅크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판매채널 확대 및 경영효율성 증대, 소비자 입장에서의 원스톱금융서비스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 범위와 정도에 따라 각 금융업종의 고유영역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겸업화 영역으로 판단된다.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은 은행상품을 보험사의 판매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주된 은행상품으로 예금상품의 취급과 일반대출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우선 보험사의 판매채널이 예금을 수취할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안전성과 즉시적 현금화를 보장하는 예금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일정한 시제를 갖추고 엄격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춘 채널망이 필요한데 적어도 현재의 보험사의 판매채널은 이러한 요건과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출관련 상품의 경우 신용분석 능력이 핵심역량인데 보험사의 판매조직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또한 기존의 채널망으로는 쉽지 않은 업무영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은 ‘자회사나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일부 보험사가 산업자본에 속해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경영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의 틀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들어 외국자본이 국내은행들을 다소 소유하게 되어 ‘자본의 국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과 산업자본간 분리’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양자간 분리가 원칙적 기조인 외국의 제도 및 현황, 국내의 경우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이 가져올 경제력 집중문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감독 및 사법체제 등을 고려할 때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산업자본에 소속되지 않은 생보사의 경우 선택에 따라 자회사나 지주회사 형태의 은행업진출은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생보사의 자본규모와 현 국내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은행업이라기보다는 현금입출금이나 인터넷거래 및 저축금융기관 등 제한적 성격의 은행업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험사의 신탁업 영위는 적극적으로 허용을 검토할만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보험사가 이미 저축성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보험상품의 만기시 이의 연속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신탁업은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며 보험사들이 이미 고객의 장기자산을 수탁하여 대출을 포함한 장기적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위험관리, 이해상충 등에 있어 오히려 증권사의 신탁업 수행보다 문제점이 적은 상황이며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 및 사업안전성 등이 떨어지는 보험사의 경우 신탁업이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compliance 를 충족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업무와의 엄격한 차단벽 설치가 가능한 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신탁업을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은행의 보험업 확대

가. 현황

은행은 현재 보험관련 상품의 판매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험업에 진출해 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2005 년말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보험권은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퇴직보험 상품 취급이 가능한 반면 은행권은 이를 취급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나. 정책방향

은행이 이미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상품이 은행의 경영위험과 이를 통한 금융시스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운용자산의 특성상 기존 대출상품만이 아닌 부동산 등에의 투자로 인한 위험부담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적절한 내부위험관리 시스템 및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은행의 경우 이미 고객자산의 운용기관으로서 상당한 역량과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상품의 동시 취급 시 고객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효용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이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가 될 것이다. 은행이 이를 취급할 경우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 등의 업무를 은행이 혼자 수행할 것이므로 신탁업의 컴플라이언스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취급상품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장기적 수탁과 운용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연금자산간의 분리보관, 독립적인 수탁업무 기능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보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손상호 등(2005)).

또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경우 수탁자의 부채로 자산의 운용책임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자산의 운용권한도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부여될 필요가 있는데 불특정금전신탁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제를 갖는다. 특히 향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시장이 불특정금전신탁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재산관리기능에 해당하는 재산신탁을 강화하려는 장기적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원본보전 불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이라는 신탁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연금 관리를 위한 신탁계약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가. 현황

현재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은행, 증권 및 보험사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경쟁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은행금융기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손상호 등(2005)).

현재 금융결제원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은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 공동망 등 은행공동망 각각에 대해 은행과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증권사 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제휴를 맺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은 지급결제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자체 상품이 지급결제기능을 갖추므로써 상품의 대고객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경우 자산관리계좌를 기

반으로 한 직불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지급결제기능을 갖춘 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보험사들은 내로우뱅크(narrow bank)의 설립을 통해 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 제한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업자들도 소액결제 또는 지불대행 형태의 유사 지급결제업무를 행하고 있다. 내로우뱅크는 1930년대 은행위기의 해결책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Allais(1948), Litan(1987)), 은행의 기능 중 대출 등에 의한 자금중개기능을 없애고 조달된 예금을 국공채 등의 안전자산에 운용함으로써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아이디어이다.

나. 정책방향

지급결제시스템은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이의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결제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외부충격효과는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의 경우도 은행과 저축기관 등 수신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 금융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재무적 건전성과 유동성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 시스템은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기관간 신용에 의거한 차액결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가금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수익구조는 은행에 비해 높은 위험성과 시계열적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은행에 비해 재무적 건전성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약하고 재무적 건전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이들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증권금융 또는 증권예탁원 등 대행기관이 개별증권사나 보험사의 결제위험을 공동화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동대행기관을 통해 한국은행에 적정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기관에 대한 대행기관의 자율규제 근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제불이행의 위험에 처할 경우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내로우뱅크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이의 목적상 예금전액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신용경색을 유발하여 기업대출과의 대체관계가 발생하며 금융중개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금융기관의 신용창조 기능과 금융자원의 활용도

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산운용상 제약 및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회적 경로를 통한 신용공여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나는 것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즉시적 환금성을 가진 예금이라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설사 내로우뱅크가 자산운용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지급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위험의 문제는 상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등 공공적 지원이 불가피한 성격의 기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설사 내로우뱅크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 은행업법에 의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자산운용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사전적 규제 및 사후적 감독기능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도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특히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가 완벽히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겸업화 논의는 내부겸영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좁혀진 상황이다.

내부겸영방식, 자회사 방식 등 다양한 겸업화 방식과 지주회사방식의 가장 주된 차이는 바로 지배구조상의 차이로 인식될 수 있다. 즉, 자본조달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산하의 자회사들이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연적인 방화벽(fire wall)이 형성되어 위험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자연스러운 차단벽(chinese wall)이 형성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내부적으로도 자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경우 지주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의 문제도 사라진다.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가운데 국내 금융산업에서 겸업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금융권별로 그 규모와 소유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은행주도의 금융발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증권사나 보험사의 경우 은행인수 등을 통한 겸업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대주주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있어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소유에 한계가 있다.

결국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겸업화의 이슈는 산업과 금융의 연계 문제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이 겸업화 원칙에 우선하는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겸업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산업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산업자본 소유의 금융기관이 은행을 인수하거나 은행업을 겸업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가 가능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추가적 선택사항은 어느 선까지 내부겸영의 영역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내부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비용절감효과가 이에 따른 위험증가와 이해상충의 문제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엄격한 방화벽과 차단벽의 설정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감독기능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임호,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정책조사보고서』 2003-04, 한국금융연구원, 2003. 4
- 구본성, 「겸업화의 동향과 과제-은행업을 중심으로」, 세미나발표자료, 전국은행연합회, 2005
- 김동원, “겸업은행제도의 특성과 주요 쟁점”, 금융연구 9권2호, 1995.12, 한국금융연구원
- 김선호, 「겸업은행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No.5, 1997, 한국금융연구원
- 김정수, “증권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한계”, 주식, May 2004, 한국증권거래소.
- 김정훈, "이업종 기업들의 은행업 진입에 대한 선진국의 가이드 라인", 『조흥경제』, 2000. 9.1 pp.39-46
- 김형기, 김상의, 최재현, 『업무영역 규제완화와 보험사 전략』, 삼성금융연구소, 1999,12
- 김형원, 김승년, 『금융업종별 고유기능 및 업무영역 규제에 관한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04.1
- 남상욱, 「Assurfinance를 통한 보험사 종합금융화 추진방향」, 손해보험, 2002.5
- 류건식, 정석영, 「우리나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호요인 분석」, 「보험개발연구」, 2005-03,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박경서, 신보성, “한국자본시장 규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
- 손상호, 정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 2001.11, 한국금융연구원
- 손상호, 구본성, 임병철, 김자봉, 남재현, 이석호, “금융겸업화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정책조사보고서 2005년 9월.
- 이건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14권 39호, 2005.10. 1~7, 한국금융연구원
- 임영재, 이중기, 「기업연금의 지배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03-03
- 장진성,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지급결제시장 경쟁구도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5. 7
- 정세창·권순일,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12

- 정세창 · 박홍민 · 이정환,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2.12
- 금융개혁위원회, 「금융개혁 종합보고서」, 1997.12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9
-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 금융의 이해」, 2003.9
- 한국금융연구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2003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4.12
- 한국은행, 은행의 겸업화 전략과 정책과제, 보도자료, 2000
- 해외생보동향, 「미국보험사의 은행업무 진출 사례」, 2002.10
- Akelof, "Market for lemons; Information asymmetry and market failures", 1961.
- Allais, M. (1948), *Economie et Interet*, Librairie des Publications Officielles.
- Barth, James R., Gerard Caprio, Jr. and Ross Levine,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Banks Around the World: A New Database," *Worldbank working paper series* No. 2588, Worldbank, February 2001
- Barth, James, R. Dan Brumbaugh Jr. and James A. Wilcox, "The Repeal of Glass-Steagall and the Advent of Broad Banking"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2), pp. 191-204, 2000
- Cantillo, M., "The Rise and Fall of Bank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 *American Economic Review* 88(5), pp. 1077~1093, 1998
- Ed Morgan, 'European Bancassurance Review', Millman Global, 2003
- Fazzari, S., R. Hubbard, and B. Peterson, "Financing Constraints and Corporate Investment,"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8, vol.1.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own Copyright 2000.
- Friedman, M. (1959).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The Millar Lectures Number
- Three New York City: Fordham University Press.
- Gertler, M. and S. Gilchrist, "Monetary Policy, Business Cycle, and the Behavior of Small Manufacturing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rch 1994, pp.309-340.
- Hubbard, R. G., "Capital-Market Imperfection and Invest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98, 36, pp.193-225.
- Ishi Hisaya,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Latin America" ,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sia and Latin America,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Unit*, OECD, 2001

- Kim, D., Kyung S. Park, and Y.S. Lee, "Credit Crunch and Shocks to Firms: Korean Experience und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co-authored with D.W. Kim and Y.S. Lee), *Emerging Market Review* 3, 2002.
- Krainer, Joha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FRBS Economic Review* 2000, pp. 15~24
- Kroszner R., and R. Rajan, "Is the Glass-Steagall Act Justified? A Study of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with Universal Banking before 1933," *American Economic Review* 84, September, pp. 810~32
- Llewellyn, David T., "Universal Banking and the Public Interest: A British Perspective" , in Anthony Saunders and Ingo Walter eds., *Universal Banking: Financial System Design Reconsidered*, Irwin, pp. 161-204, 1996
- Morck, R., B. Yeung, and W. Yu, "The information content of stock markets: Why do emerging markets have synchronous stock moveme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21-260, 2000.
- Myners, Paul, *Institutional Investment in the United Kingdom: A Review*, March 2001.
- Mile, W. (2001), "Can Narrow Banking Provide a Substitute for Depository
- Park, Kyung Suh, "Bank-led Corporate Restructuring", in 'Economic Crisi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dited by Stephen Haggard et. al, Cambridge Press, 2003.
- Santomero, A. M., and D. Eckles (2000), "The Determinants of Success in the New Financial Services Environment: Now That Firms Can Do Everything, What Should They Do And Why Should Regulators Care?," *Working Paper* No. 00-32, The Financial Institutions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antos, Joao A., "Banking and Commerce: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to Other Countries?" , *Economic Review IV*,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pp. 14-26, 1998
- Skipper Harold d.,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Worldwide: Premises and Pitfalls," *Policy Issues in Insurance*, OECD, 2001
- Tillinghast-Towers Perrin, *Insurance Pocket Book* 각 호
- Wallace, N. (1996). "Narrow Banking Meets the Diamond-Dybvig Model," *Federal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20, pp. 3-13.